

INVENTION & PATENT



INVENTION & PATENT _ Vol. 425

2011 December

12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축사 및 기념사
수상자 인터뷰 · 명단



[Column]

특허전쟁, 드러남과 바라봄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통해 본 디자인권 보호의 양면성

글로벌 특허분쟁, 그 필승 전략

Contents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축사 및 기념사 수상자 인터뷰 · 명단

IP Column

- 22 글로벌 특허분쟁, 그 필승 전략
- 24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통해 본 디자인권 보호의 양면성
- 30 특허전쟁, 드러남과 바라봄
- 40 Oracle vs. Google 특허분쟁
- 47 어린이 그림책 <달사베트>, 걸그룹 이름으로 도용되다?
- 50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활용사례 (주)한국주조
- 54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IP Report

- 56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 62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고찰 및 사례연구
- 67 국가 R&D 특허의 ASEAN 주요국가 지원방안
- 71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도출방안
- 75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

IP Information

- 82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 85 KIPO NEWS 특허청 소식
- 88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9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94 11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 95 발명역사 속으로 비로 형제 등의 불펜
- 96 건강하게 삽시다 숙취 잡는 칩차와 마사지로 건강 챙기세요
- 99 독자마당 QUIZ
- 100 책과의 만남 읽기의 힘 듣기의 힘
- 101 문화산책 공연 (송년가족뮤지컬 애니)
전시 (2011 서울인형전시회)





한국전력의 스마트그리드가 CO₂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성황리에 개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30주년 대통령상에 포항공대 산학단의 ‘플렉서블 기판’
한국을 지식재산강국으로 이끌 차세대 발명품들 한자리에 모여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이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삼성동 CO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관련 전시회로,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전시회에는 국내 우수 지식재산(특허 94점, 상표 11점, 디자인 15점) 수상품뿐만 아니라, 세계 30개국 총 500여 점의 해외 발명품이 함께 전시되었으며,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이수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등이 참석해 우수 발명품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올 한 해 가장 우수한 발명품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지도교수 이종람)의 ‘플렉서블 기판 및 전자소자 제조 기술’이 수상하였다.

이 기술은 접거나 구부려 두루마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중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둘둘 말아서 갖고 다니다가 새로운 기사가 뜨면 펼쳐 보는 전자신문, 작게 말아서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화창한 날 크게 펼쳐서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는 휴대용 태양전지처럼 공상 과학영화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된다.



1

국무총리상에는 목우산업(대표 김세홍)의 '비대칭형 편심판 구조의 수목 보호판'이 선정되었다. 이 보호판을 사용하면 가로수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더라도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지도교수 강기주)의 '나선형 와이어로 직조된 3차원 다공질 경량 구조체'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밀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항공기와 선박을 제작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상작 전시와 전시품에 대한 구매상담회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우수 발명품의 제품 구매와 투자 유치, 기술 이전을 지원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발명특허대전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 특독 튀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품되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특허기술이 상품화되고, 우리 사회에서 발명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3



4

사진설명

사진1

- 김황식 국무총리(중앙) · 이수원 특허청장(우) ·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좌) 및 내외귀빈들이 수상자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2

-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3

- 이수원 특허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4

-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여러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 황 식
국 무 총 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명인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명과 기술혁신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과 '상표·디자인권전' 이라는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명과 기술개발에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으로 현실에 구현되는 지식기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LED 등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가 산업 경쟁구도를 변화시키는 등 그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3위, 최단기간 특허등록 100만 건 돌파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해 온 발명인 여러분께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발명의 날이었던 5월 19일 「지식재산 기본법」을 공포한 데 이어, 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7월)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22일 제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에 대한 전략적 특허 사업

화를 통해 공생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식재산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더욱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정성들여 개발한 지식재산이 열매를 맺도록 확실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발명인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명인 여러분,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 경제규모의 61%로 세계 3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하는 지식재산 측면에서, 우리는 더욱 큰 지식재산 영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다시 한 번 ‘발명특허대전’과 ‘상표·디자인권전’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 광 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내·외 귀빈 여러분.

밤을 낮 삼아, 연구실을 집 삼아 연구에 전념하고 계시는 발명인 여러분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발명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창의적인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지식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창의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애플사는 글로벌 시가총액 1위(400조 원) 기업으로 가장 값비싼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창의성을 앞세운 삼성전자 한곳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15%(150조 원)를 차지하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빼놓지 않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과거의 발전경험을 돌이켜봐도 경제발전의 경험은 곧 발명인 여러분들이 열어주신 기술발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공업,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IT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때마다 발명인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 넣어주셨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학진흥계획이 함께 준비돼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규모(GDP) 대비 특허출원 건수, R&D 투자대비 특허출원 건수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R&D(Research & Development) 부문의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R&D를 넘어 I&D(Imagination & Development · 상상개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티브잡스’와 같이 기존의 기술을 잘 엮어내는 풍부한 상상력의 산업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젊은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새 수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술융합형 새 상품,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내는 새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지식경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 · 외 귀빈 여러분.

과학기술이 이론과 논리에 근거한 지성(知性)의 집합체라면, 지식재산은 과학기술의 바탕위에 발명, 디자인, 브랜드가 어우러진 감성(感性)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러한 감성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기업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을 통해 감성의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회가 발명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고, 발명활동을 더욱 진작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발명인 여러분과 가족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름 그대로 발명인 여러분 곁에서 발명을 도와드리고 발명품의 사업화를 진흥시키는데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종람 교수

접고 말 수 있는 플렉서블 전자소자 개발

“미래에는 스마트카드 · 핸드폰 · 태블릿PC · 노트북 등을 접거나 둘둘 말고 자유 자재로 구부려 주머니나 가방에 쉽게 휴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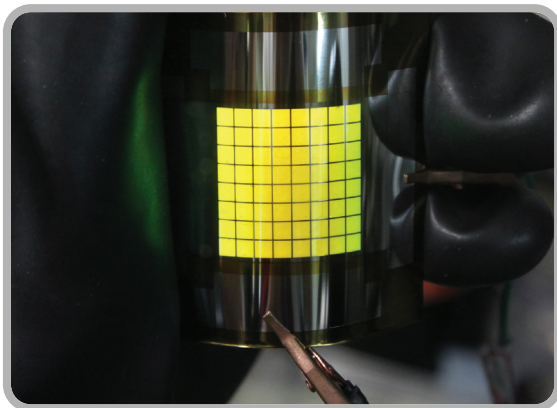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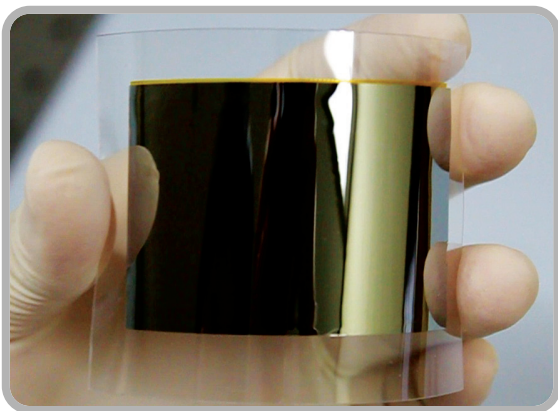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종람 교수(신소재공학과) 팀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반도체 등 모든 종류의 전자소자에 적용,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 ‘극평탄화 플렉서블 금속기판 기술’을 개발, 201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전자소자용 유리기판 수준의 표면거칠기를 갖는 모기판 상에 금속기판을 형성한 후 모기판과 금속기판 사이를 분리시켜 모기판의 표면거칠기를 금속기판에 전사하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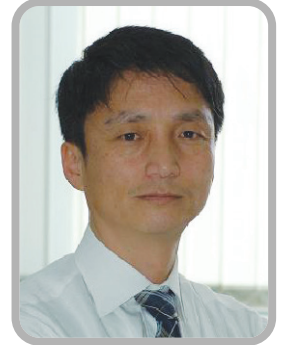
기존의 플렉서블 기판으로는 주로 얇은 ‘유리기판’ ‘플라스틱기판’ ‘금속기판’ 등이 사용돼 왔으나 유연성 부족, 고온 안정성 및 열팽창 등의 물성 문제, 압연가공 시 문제 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연마나 폴리머 코팅공정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판 평탄도 내열온도 저열팽창계수 고방열 등의 물성을 갖는 플렉서블 금속기판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다.

이종람 교수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의 제품 양산에 선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미래 기술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원천기술은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이 기술 개발로 반도체 조명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센서 배터리 등의 차세대 전자소자 시장은 2020년쯤 수천조 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와이어 직조 '3차원 다공질 경량 구조체' 개발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기주 교수

피 아노선과 같이 저가격 고품질 고강도의 나선형 와이어로 직조된 3차원의 다공질 경량 구조체 기술이 개발됐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기주 교수(기계시스템공학부) 팀은 와이어를 나선형으로 성형한 뒤 이를 정사면체 트러스 구조로 셀을 형성시키고, 와이어 교차점을 브레이징이나 수지접합으로 고정시키는 와이어 직조방식 다공질 경량 구조체를 개발,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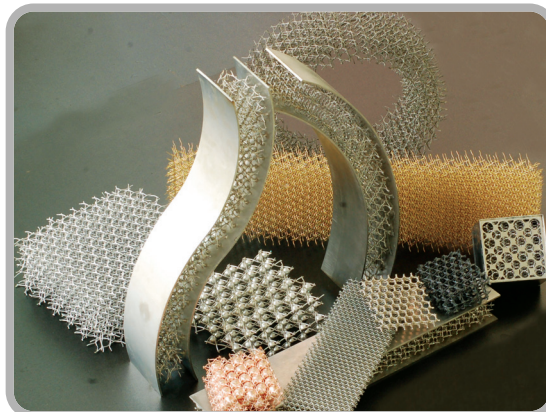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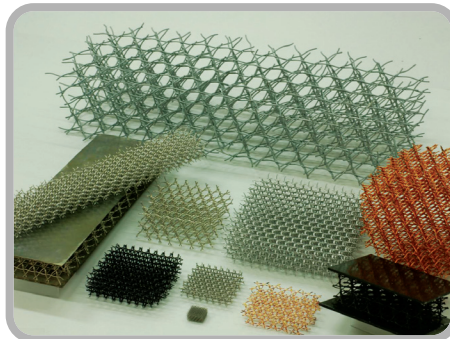
기존의 다공질 구조체는 '허니컴' '발포제' '트러스 구조체' 방식 등인데 이는 면재와 심재가 분리되거나, 낮은 강도, 직조방식의 대량생산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옷감을 짜듯이 연속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텅스텐 티타늄 같은 고품질 소재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고강도의 트러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초경량 구조재료에다 내부 공극률이 높아 다른 물질을 채울 수도 있고 기체흐름의 유동 저항이 낮으며 열전달 효율이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기술 소재는 가볍고 튼튼한 장점으로 튼튼한 구조재, 고효율 열교환 매체, 인공뼈 소재, 화학 촉매 지지체, 필터 등의 응용 기초소재로 적용될 뿐 아니라 선박 해양구조물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이 기술을 국내 한 조선업체의 조선 해양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한 상태이다.

강기주 교수는 "트러스 형태의 다공질 금속은 차세대 신소재로서 잠재성이 있으나 대량생산의 제한이 약점이었다"면서 "이번 기초소재 기술개발로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 응용시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우산업
김세홍 대표

이제 도시 가로수, 쉽게 보호 하세요

“**사** 람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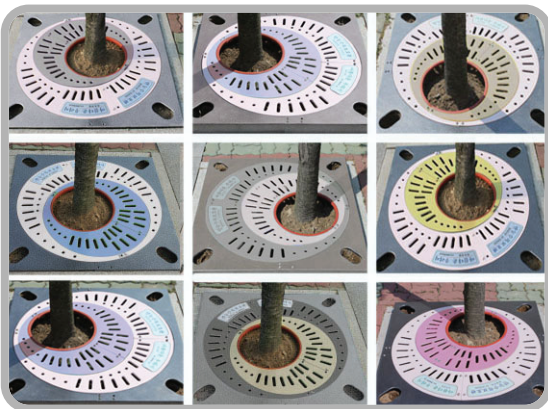
목우산업 김세홍 대표는 도시 가로수의 수형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보호판을 설치할 수 있는 ‘비대칭형 편심판 구조의 수목 보호판’으로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시 미관과 환경을 위해 심어진 가로수는 대기오염과 소음 감소는 물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도시의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나무의 모양 때문에 땅 위에 설치하는 보호틀의 한 가운데 심기가 어려워 보호

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목 구멍을 지나치게 크게 형성하여 설치하거나, 그 위치에 따라 맞춤 제작하여 일일이 설치했다.

그러나 김세홍 대표가 발명한 ‘비대칭형 편심판 구조의 수목 보호판’은 심판을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어 앞으로는 수목에 맞게 보호판을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세홍 대표는 “기존의 수목 보호판은 수목의 크기에 맞지 않아 쓰레기 유입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의 발이 끼여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을 뿐 아니라, 맞춤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긴 공사기간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는 수목에 맞는 보호기능과 도시 가로 경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맞춤·개별제작이 아닌 양산 금형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제품과 함께 기능성 및 디자인성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지진에 대비해야



• (주)면진테크
제희문 대표

한 반도는 과연 지진의 안전지대일까.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지진 발생빈도는 매년 60여 건으로 6일에 한 번 정도 지진이 일어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진도3 전후의 지진으로 큰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진도5~6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의 규모는 막대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에 응답하는 면진장치’를 개발한 (주)면진테크 제희문 대표가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

일반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내진기술은 건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여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건물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건물 내부에 진동이 전달되어 내부 피해가 발생한다. 면진기술은 지진동이 건물내부의 장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면진장치는 정보·통신장비, 전산장비 같은 구조물을 탑재하는 받침으로, 지진으로부터 건물내부에 탑재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 재해 저감장치이다. 일정 이하의 진도를 가지는 지진에 대해서는 유동하지 않지만, 일정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수평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지진으로부터 구조 및 장비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희문 대표는 “기존의 제품들이 4개의 원추형 볼로 구성되어 있어 고르지 못한 하중분산으로 제품 파손이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면진테크의 면진장치는 16개의 볼베어링 구조로 상부 하중을 분산하도록 설계돼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설치와 유지보수 측면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또 “아직 지진에 대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국외에 면진테크의 면진장치를 보급해 중요재산과 IT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주)엠스키
김정태 대표

인라인과 킥보드, 스키의 장점을 한번에

“이 발명품은 발판이 두 개로 나뉘어진 신개념 킥보드로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밀면서 전진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경사면에서는 스키 활강의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다리 근력운동과 상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 재미있게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멀티 레포츠 기구입니다.”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레포츠용품인 ‘킵트라이시클’로 (주)엠스키의 김정태 대표가 WIPO사무총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발명품은 킥보드를 발전시킨 것으로 손잡이와 두 개의 발판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움직임이 자유로워 전신을 움직이며 운동과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구이다.

기존 제품은 발판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이거나 발판이 움직이더라도 벌렸다 오므리는 단순 기능 제품이었으나, ‘킵트라이시클’은 인라인스케이트처럼 한발씩 밀면서 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정태 대표는 “처음 2002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미국 타임지에 실린 제품에 관심을 갖고 탑승해보다가 평지에서 구동하기 힘들고 스피드에 대해 한계를 느껴, 더 타기 쉽고 인라인 스케이트와 같이 스피드를 내면서 탈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하다가 발명하게 됐다”면서 “최근 휴일의 증가와 가족중심의 레저인구가 늘고 있는데 온 가족이 쉽게 타고 즐기며 건강과 레저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자

대상 · 우수상 · 특별상

상격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대상(대통령상)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플렉서블 전자소자의 제조방법, 플렉서블 전자소자 및 플렉서블 기판
우수상 (국무총리상)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선형 와이어로 직조된 3차원의 다공질 경량 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
특별상 (WIPO 사무총장상)	목우산업	김세홍	비대칭형 편심판 구조의 수목 보호판
	(주)면진테크	제희문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에 응답하는 면진 장치
	(주)엠스키	-	킥트라이시클

금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시코라인	신용철	무단변속장치
(주)동아사이언스	-	교육용 전자회로의 입체블럭
유엠아이	김동관	플러싱 기능을 가진 수액조절기
(주)두임	-	토선부를 구비하는 도어힌지

금상(지식경제부장관)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분자 박막 안에 자발 형성된 다층 구조의 나노 입자층을 플로팅 게이트로 이용한 다중 준위 플래시 기억 소자와 그 제작 방법 및 그의 쓰기/읽기 동작 제어 방법
미래자동차	윤계천	터빈 증기 번의 유압 작동기 서보 시스템용 이동식 시험기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이산화탄소의 회수 방법
(주)한메드	양재락	근력 측정기
온두루밸브산업	황선수	유량조절에 의한 자동온도조정 테이퍼밸브
(주)신우테크	-	LED 어레이 모듈 및 이의 제조방법
(주)원준하이테크	-	건축물의 제진용 현치
(주)대진코스탈	-	커터날의 위치조정구가 형성된 문서세단기용 절단장치의 동력전달구
(주)에어피켓	이재훈	EPS, 우레탄발포제, PP, PE 파레트용 표면코팅 조성물
(주)동방데이터테크놀로지	-	듀얼 스캐닝 처리를 통한 고해상도 LED 전광판
(주)성진텍	-	농업용 제초기의 안전커버
(주)케이에스텍	-	조립식 수로구성용 측구연결부재
-	김덕기	일반칫솔이 장착 가능한 전동칫솔

은상(특허청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	박진신	이동식 일체형 화장 설비
차세대자전거(N.G.D.B)	마지현	무체인 자전거용 기어변속장치
스카이휠	최진만	휠체어탑재용 삼륜손 자전거
XRE	서진혁	재밀봉 가능한 이지 오픈 엔드
(주)에이티엔지	-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제습 장치 및 그 제어방법
케이지시스템	박중화	천정에 설치된 콘센트 승하강장치
(주)일우텍	-	부품 세척기 및 세척 방법
(주)스마트에드인	-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조우테크	-	전선 이음 커넥터
한국에이프런	이승목	체결이 간편한 끈을 구비한 앞치마
(주)휴로	-	디지털키가 형성된 필통
타코스	고현규	일회용 냅킨
(주)유니솔루션플러스	-	합성수지 사출성형용 금형의 압력제어 장치
온누리K-1방수(주)	하태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제 및 그 제조방법
푸른도시	한윤정	광확산 폴리카보네이트용 브로아 타입의 사출금형과 사출방법
(주)현무	-	차량용 바리케이드
하라테크	김선환	의자 등받이의 그물망 체결구조
-	유병혁	작동부를 갖는 의자 시트
인천항만공사	-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주)한국농동플랜트	방승운	다기능 농산물 건조장치
어스그린코리아(주)	-	가로수용 급수 및 급양 장치 및 가로수 보호 조립체
옵토파워(주)	-	광을 이용한 전류/온도 측정장치
(주)씨케이앤비	-	디지털 영상 장치의 영상 왜곡 판단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주)하이텍이피씨	-	원격검침단말기의 통신실패복구방법
탱크팡코리아	강민수	스패너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천열에너지(주)	-	난방패널의 연결방법 및 그 연결편
레일테크(주)	왕종문	비상탈출용 완강기
-	김영태	영구자석의 마주보는 동일극 사이에 형성되는 고밀도자속을 배출 흡인하는 발전기 및 전동기용 회전자
(주)수빈홀아트	-	세탁물 스페이서
NB-LIFE	신미정	질 세정 및 마사지 장치
유비링크(주)	-	피난구 유도등의 그림문자 표시방법
-	이정호	족욕기로 사용가능한 좌변기용 발판
농업법인 (주)웃가네	-	참뽕발효진액의 제조방법

동상(한국특허정보원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I. OP	표수호	자유 회전 방지 바퀴
-	윤이식	조립식 프레임 구성물
그린엘에너지기술(주)	이명환	자동전압조정기
-	지정현	경추견인베개
바이오코리아(주)	-	개선된 항 B형 간염바이러스 활성을 갖는 집신나무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그러한 추출물을 함유한 약제학적 조성물 또는 식품 조성물
(주)비앤디	-	웰빙 바디 드라이어 및 이의 제어방법

동상(한국무역협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노팸스(주)	임주혁	자체증기압력을 이용한 자동 급수식 증기발생장치
(주)수도프리미엄엔지니어링	-	온도감응형 유체흐름단속장치
KYK김영귀환원수(주)	-	냉온 이온수기
(주)한도공업	송원호	태양광을 이용한 문자 부착식 도로표지판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	원용덕	셀레늄 및 아연이 강화된 숙성흑마늘 및 이를 이용한 숙성흑마늘 농축액의 제조방법
(주)아이비티알앤씨	-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개인 금융 계좌를 이용한 지불 처리 방법 및 시스템

동상(중소기업중앙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	김현철	액상발열조성물,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및 발열파이프
-	백승엽	비닐롤팩이 구비된 쓰레기통
I. OP 대전보건대학교	오명수	유속증기형 구조를 가지는 회전 블레이드
-	박지환	피스톤 목발
-	신백호	과일 봉지 자동 씌움 장치
바림	박승복	커피 찌꺼기 보관함

동상(전국경제인연합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에이디웰빙테크	-	육실용 바닥 난방 시공방법
-	최광열	제동 유지가 가능한 탠덤 마스터 실린더
(주)조아앤조아	-	작동완구를 이용한 무빙 학습게임기
(주)푸드에너지	-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한국개발	도남호	배수트랩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	공기중 파라메트릭 트랜스미팅 어레이를 이용한 초지향성초음파 거리측정을 위한 멤스 기반의 다공진 초음파트랜스듀서

동상(대한상공회의소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TNS	조재현	지하철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 제어 방법
(주)우림	홍순황	체결부재를 구비한 반사캡
(주)조은환경	-	가변형 여과장치
광주 남구청	김성중	차량용 제설장치
(주)오믹시스	-	씨앗 스티커 및 그 제조방법

동상(대한변리사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그린피스	장홍선	생각과 눈, 목, 몸을 움직여서 읽는 책
(주)블루앤	-	반려동물 케어 램프
레이저공방	박재중	교구 및 게임 세트
-	이수동	차도에 안전하게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공방법 및 구조
(주)계수나무	박규식	텀블러형 추출 농축장치
(주)조아앤조아	김영조	리라이트 기능을 갖춘 놀이형 학습게임기

동상(한국여성발명협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엠앤에이치(주)	-	머리마사지장치
(주)료류 일렉트릭	김용오	스팀밸브를 구비한 테이블세척기
한국돌기(주)	-	휴대용 콘택트 렌즈의 세척기
(주)에이징박스	박진호	신체단련용 운동기구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들의 지식재산권 취득과 발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관심 있는 여성들과 여성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해 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회원가입 혜택

- 무료 변리 상담 및 변리비용 할인(최대 30% 할인)
- 국내외 발명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참가 시 1개 부스 무료 제공
- 협회 발명진흥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발명의 날 등 정부포상과 신지식특허인 등으로 추천
- 발명 제품 홍보 및 전시 : 협회 전시 및 대언론 홍보
- 특허기술 사업화·거래화 지원
- 발명·특허 관련 정보 제공 : "발명하는 사람들" 무료 발송
- 여성발명인 성공사례집 발간
- 여성발명인워크숍 개최(연1회, 참가비 지원)

■ 회원 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 서류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02-538-2710)
- 사무국으로부터 회원 등록 완료통보받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 입금
※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12만원
(입회비는 가입 시 한번만 입금)



한국여성발명협회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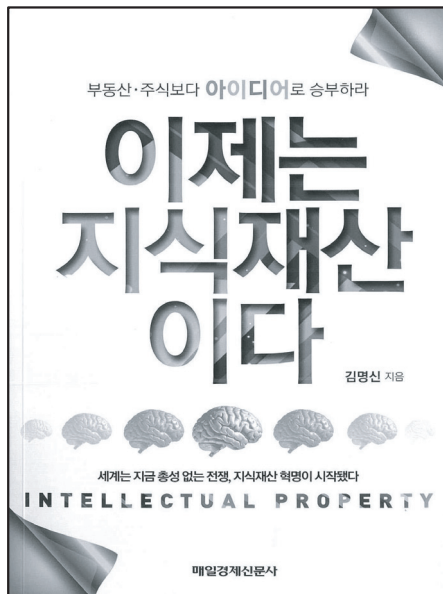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전화 (02)538-2710 팩스 (02)538-2714
이메일 kwia@inventor.or.kr 홈페이지 www.inventor.or.kr

신간안내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Intellectual Property)

김명신 (金明信)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발행



차례

1. 지식재산이란?
2. 지식재산에 얽힌 이야기
3. 지식재산 분쟁
4. 지식재산에 관련된 제도
5. 지식재산정책

부동산, 주식보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전쟁.

지식재산사건에 얽힌 일화, 분쟁.
지식재산 혁명이 시작됐다.

전국 서점 시판
(신국판, 4도 컬러, 정가 2만원)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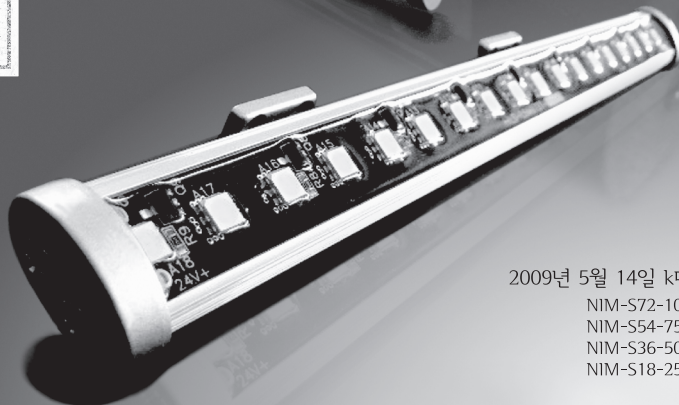
• 설치시공사례



2009년 6월1일 CE마크 선정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 NIM-S72-1000-F/WH
- NIM-S54-750-F/WH
- NIM-S36-500-F/WH
- NIM-S18-250-F/WH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 LED 조명등(NIM-CS1.5W-A)
-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부리공원



남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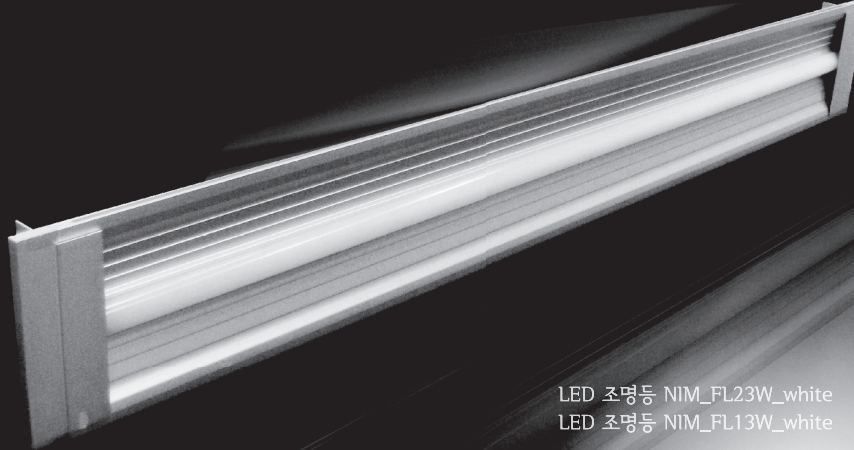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ECO FRIENDLY



-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www.nuriplan.com

(137-84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누리플랜 B/D
TEL) 02,2679,4100 FAX) 02,3660,4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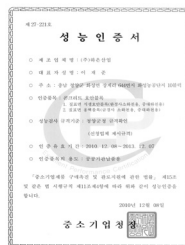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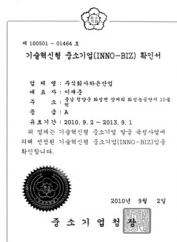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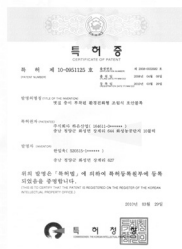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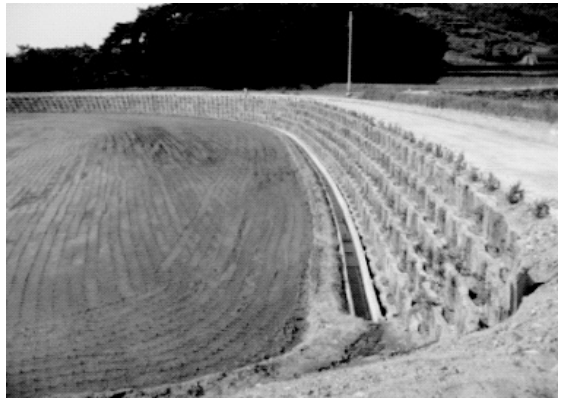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벗짚표면 호안, 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보유기술및 인증

-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 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 벗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 11건
- ◎ 실용신안: 벗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 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 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 가로수보호의자외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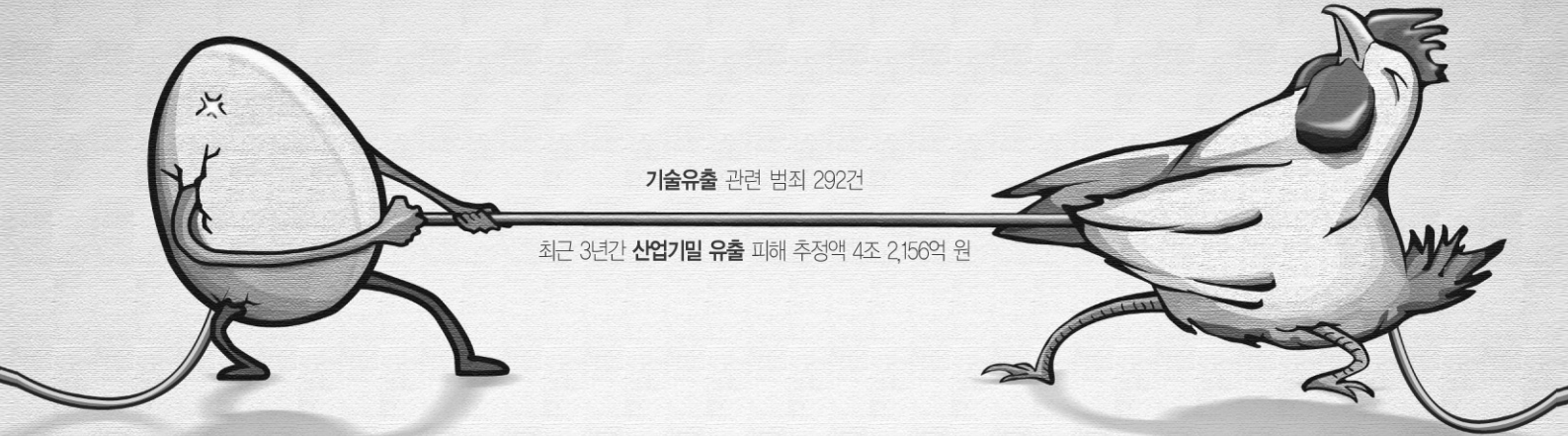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직까지 분쟁 중?

이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도용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의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
-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전자파일을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활용대상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Column

[글로벌 특허분쟁, 그 필승 전략](#)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통해 본 디자인권 보호의 양면성](#)

[특허전쟁, 드러남과 바라봄](#)

[Oracle vs. Google 특허분쟁](#)

[어린이 그림책 <달사베트>, 걸그룹 이름으로 도용되다?](#)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활용사례 \(주\)한국주조](#)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Column

글로벌 특허분쟁, 그 필승 전략

글로벌 특허 전쟁 현황, 국내 지재권법 제도 실태, 지재권법 제도 해외 사례 (영국 · 일본 ·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변리사 역할을 알아보자.



전 종학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미 국에서 시발된 삼성 · 애플 간 특허분쟁은 삼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한국, 일본, 독일 등 9개국으로 확대되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과히 글로벌 기업 간의 생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이전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제 특허분쟁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올 상반기 36건의 국제 특허소송 통계¹⁾를 보면 67%(24건)가 피소 사건이며, 그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피소 사건(22건)이었다. 한편, 국적별 특허소송 현황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이 전체 소송 사건의 절반 정도인 1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의 지식재산 및 관련 법 제도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지식재산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총 수출액의 60%가량을 지식재산산업이 담당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지식재산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타 산업에 비해 60%가량 상향되었다. 또한 2008년 미국의 지식재산 로열티 수입은 916억 불에 달하며, 1,800만 명이 지식재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처럼 미국은 이전부터 지식재산산업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 이면에는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지식재산정책과 이와 관련된 법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다. 지재권 조직 및 자원 우선화에 관한 입법(PRO-IP/2008)에서부터 최근의 특허법 개정까지 미국은 지식재산에 그들의 미래를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허변호사 제도의 정착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배경지식과 법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대리인들이 국가와 기업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

미국의 사법제도 역시 국가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 정비 중에



있다. 특히 특허 관련 소송(2심)은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관할하고 있어, 재판의 전문성 및 신속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허 제도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도 변리사의 특허 관련 소송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을 두고 있다. 영국의 변리사는 영국특허변리사협회(CIPA)가 주관하는 소송교육과정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소송 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소송 대리인 자격을 획득한 변리사는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특허지방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된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특허전문법원인 특허지역법원을 두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법원과 최고법원에 차례로 항소할 수 있다. 최근 논의 중인 EU 특허의 통합에서도 특허 관련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그리고 신뢰성(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체 특허법원(CPC) 설치와 3가지 대리인 유형(EU 회원국 변호사와 EPA, 그리고 변리사와의 공동 대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듬해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립하고 국가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지원 및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내 특허소송 체계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특허야 말로 기업의 가장 신뢰받는 무기이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애플, MS, IBM 등 대표적인 지식재산 기업들은 특허를 통해 시장을 개척, 장악하고 후발 주자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의 선두에 각국의 기술 및 지재권 법 전문가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힘을 모아 점

점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특허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주요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에게 실무를 의존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한국도 앞서 언급한 나라들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이미 이전부터 갖추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업무)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비해 7년이나 앞서 특허법원을 설립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허법원은 최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만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허침해소송은 여전히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별개로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변리사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변리사의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는 현재 특허법원을 제외하고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FTA 시행 등으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되면 글로벌 특허분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기술이 분쟁의 핵심인 특허분쟁에서 기술과 법으로 중무장한 미국의 특허변호사, 영국과 일본의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력 소송에 국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기업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그 험겨운 특허전쟁에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변리사가 실무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2011. 12]

1) 2011년 상반기 국제 특허 소송 동향(특허청)
2) 미국 지재권 정책 및 특허 개혁(2011. 지재권 국제 동향 설명회 / 권규우 주미특허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통해 본 디자인권 보호의 양면성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있는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의 핵심적인 이슈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외장)의 본질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정경원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본과 수십 년 전에 우리도 경험했었지만,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절대 빈곤시대에는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가게를 찾아서 다리품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소득 1만 달러가 넘어서면서부터는 품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최근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여 삶의 질과 감성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도래하면서 “디자인을 사는 시대”라는 말이 실감난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핸드폰이나 노트북, 전자책 단말기 등 모바일 기기는 물론 신발이나 가방은 물론 가구나 자동차 등을 고를 때 디자인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디자인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쓸모 있는 인공물을 만들어주는 디자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호레이쇼 그레노(Horatio Greenough)는 사물의 형태와 기능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름다운 것은 기능적으로 완벽하다는 약속이다”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곧 아름다우려면 기능 면에서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디자인이란 형태와 기능이 잘 어우러져서 갖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있다.

디자인 경쟁의 심화와 모방 사례의 증가

최근 기업들 간의 디자인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

은 기업들이 제품의 디자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매장에 함께 진열되는 경쟁 제품들 중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회사 내에 다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글로벌 명품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좋은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큰 결실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영국 디자인카운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자인개발에 대한 투자는 230%의 매출 신장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즉 100만 원을 디자인에 투자하면 매출이 230만 원이나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표절하거나 모방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일도 자주 생겨나고 있다.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남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손쉽게 일확천금하려는 기업들 때문이다. 디자인 표절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술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디자인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비가시적인 기술보다 모방하거나 복제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연구인력과 연구 및 실험 장비를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몰두해야하므로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소요되는 데 반해,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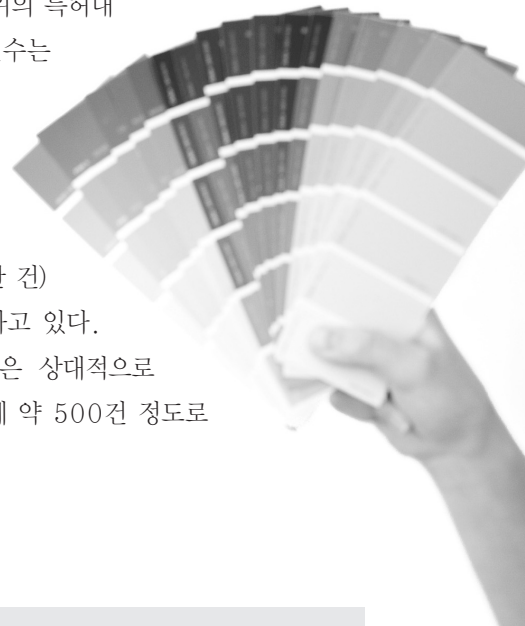
물론 개발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사한 디자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디자인을 개발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는 트렌드의 변화, 유행하는 형태와 색채, 주요 타깃 소비자들의 기호 등에 관한 정보가 비슷하면 디자인이 유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작은 몸체 속에 고도로 정밀한 부품들을 집적해야 하는 모

바일 기기들처럼 제조와 사용에 따른 제반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대상의 경우,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사한 특성을 갖는 디자인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다른 회사나 개인의 디자인을 베끼거나 복제하는 것은 남들이 애써 만든 지식재산을 훔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물론 윤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요즘은 디자인 교육기관에서도 ‘디자인 보호’나 ‘디자인과 법’과 같은 이슈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래의 디자이너가 될 학생들이 대표적인 지식자산으로 꼽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켜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려는 배려이다.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디자인권 관련 법적 분쟁에서 디자이너들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대처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대국이다. 특허 출원 건수는 실용신안을 포함하여 약 18만 건을 조금 웃돌아서 세계 1위인 미국(45만 건), 일본(35만 건), 중국(31만 건)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관련 소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한 해에 약 500건 정도로 추정된다.¹⁾



1) 허성원, 우리나라 특허출원 및 특허소송 통계에 대한 소고, 지적재산권보호 2011/11/14 13:15

반면에 세계 특허대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취득 건수 못지않게 소송 건수도 아주 많다. 2010년 특허 취득 건수는 23만 3,000여 건으로 전년도 보다 23% 증가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특허소송 건수는 2,500여 건이다. 20년 사이 미국에서 특허취득 건수는 연평균 4.5%, 특허소송 건수는 4.9%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관련 특허분쟁이 잦은 것도 관련 제조사나 특허 전문 관리 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들이 지난해 스마트폰 기기 및 통신·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대거 취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전 분야 특허소송 건수를 이전 5년과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²⁾

특허청은 “디자인 맵(www.designmap.or.kr)”이라는 웹서비스가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디자인권 등록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맵의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방문객이 37,176명이었으나, 2010년 같은 기간에는 112,355명으로 무려 202%가 증가했다. 이는 곧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권 분쟁의 허와 실

고(故) 스티브 잡스는 평소 HTC, 모토로라, 아마존, 삼성전자 등 주요 경쟁사들이 애플의 제품을 모방한다면서 ‘카피캣(Copycat)’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잡스는 애플이 어렵사리 개발한 제품과 포장 디자인을 다른 회사들이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것이다. 특히 삼성 모바일 기기의 디자인과 사용 환경이 애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자주 제기했었다. 그만큼 삼성의 추격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플이 비방 수준을 넘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데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얼핏 기술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자인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의 차이는 물론, 공정 경쟁에 관한 내용들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애플은 경쟁사들보다 앞장서서 독창적인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선두주자의 장점을 살리려는 이른바 “개척자 전략(Pioneer Strategy)” 혹은 “시장 선점 전략(First to Market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 독보적인 신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상당기간 동안 독점을 함으로써 커다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신제품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도 실패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반면에 삼성 등 다른 기업들은 선두주자의 시장 진입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나서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반응자 전략(Reactor Strategy)”이나 “선두주자 따라 하기 전략(Follow the Leader Strategy)”을 구사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두주자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어떤 형태로든 반응자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특정 회사가 독과점을 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프랜드(FRAND)」 제도가 만들어졌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서 특허권자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차별

없이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국제 공정경쟁 조항이다. 물론 이 제도는 기술 관련 특허라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디자인권에 대한 문제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디자인권의 보호와 관련되는 소송의 경우, 양자간의 합의에 따라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나거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다. 정량화하기 어려운 창의성과 심미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특성상, 표절이나 모방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디자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3대 요소로 구성되므로 모방 여부에 대한 판정이 더욱 어렵다. 문자 그대로 제품의 몸체인 하드웨어, 운영체제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휴먼웨어인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디지털 기기의 표절 여부를 법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시적인 특성이 있는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특정회사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모바일 폰을 예로 들면, 손에 들고 통화와 검색을 해야 하므로 규격이나 스펙 등에 제약이 많아 디자인의 변화를 도모할 여지가 아주 좁다. 따라서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모방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가시적인 운영체제나 UI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것은 쉽게 잡아낼 수 있지만, 모방이나 표절로 의심이 가더라도 명확한 물증을 잡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본질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 분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법적인 용어로 상품외장이라고도 하는 트레이드

드 드레스(Trade Dress : TR) 를 꼽을 수 있다. TR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모양새와 색채 등 외관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TR을 트레이드마크처럼 연방법인 랜함법(Lanham Act)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TR 보호의 목적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지적자산으로 인식하는 제품이나 패키지 등의 눈에 보이는 특성(look and feel)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다른 제품을 모방하여 디자인된 제품의 외관이나 포장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하려던 제품과 너무 유사한 모방 제품을 보고 오리지널로 혼동을 일으켜서 잘못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짜퉁 제품”들로부터 오리지널 제품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법적인 보호제도이다.

TR은 또한 코카콜라의 로고, 색채, 그리고 병, 버거킹의 매장 스타일, KFC의 마스코트처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나 이미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이 소멸된 지적자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점차 업계에서 TR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치어 리더의 복장이나 트럭의 외관, 웹사이트의 스타일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TR은 오직 외관의 보호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디자인권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모두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TR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제품의) 모양, 디자인, 색채, 재료 등의 배열이 특정한 “기능”과 연관이 있거나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기능적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용 의복 라인에 적용된 특정 모양과 색채, 재료의 배합 등은 TR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그 옷

2) 권해주, [기자수첩] 특허소송 ‘쓰나미’ 이제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1년 11월 21일

자체의 디자인은 보호될 수 없다.³⁾ 또한 옷에 사용된 특정한 빨강색은 TR로 보호될 수 있지만, 같은 빨강색일지라도 “우선멈춤(Stop)”이라는 도로 표지판에 사용된 것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⁴⁾

TR의 또 다른 기본적인 조건은 “독특함(Distinctiveness)”이다. 즉 소비자들이 특정한 TR을 보고 즉각적으로 어떤 제품을 연상하게 하는 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애플솔루트 보드카 병의 독특한 형태, UPS의 방패 형상 로고와 갈색, 노란색과 빨강색이 어우러지는 버거킹의 로고 등처럼 보는 순간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독특함이 있을 때 비로소 TR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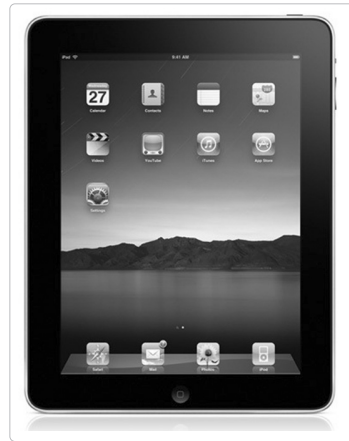
그러나 랜함법에 따르면, TR은 미국 특허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TPO)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될 수 있다. 물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TPO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등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공지가 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보호되는 특허권과는 다르다. 아직 우리에게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TR이 이미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들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 경과

2011년 4월 애플은 아이패드<사진 1>의 외관, 아이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디자인과 TR 등 지식재산권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사진 2>이 침해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 국가의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삼성이 기술 특허를 무기로 적극 대응하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애플 제소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네 모퉁이가 고르게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형태
- 제품 전면의 평평하고 투명한 표면의 덮개
- 앞 표면 주변의 눈에 띄는 금속 프레임

- 맑은 표면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화면 가운데 위치
- 투명한 앞 표면의 화면이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에 놓여 있는 것
- 제품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이 있는 아이콘이 등장함



<사진 1. 애플 아이패드>



<사진 2. 삼성 갤럭시 탭>

그런데 위와 같은 애플의 주장처럼 “네 모서리가 동일한 곡선인 사각형태” 라든지 “제품 전면의 평평하고 깨끗한 표면의 덮개” 등은 포괄적이라 권리 침해 여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디지털 모바일 기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런 방식 밖에는 디자인될 수 없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특성들은 모바일 기기를 디자인할 때,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효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보편적인 지침과 같은 내용이므로 특정 회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소송의 결과도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먼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가치분 소송에 대해 삼성이 갤럭시 탭, 갤럭시S2 등이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반면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애플이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0년 애플

플은 스페인의 소형가전업체인 NT-K 태블릿이 자사의 TR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었는데, 주요 이유는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했던 똑같은 내용이다. NT-K는 이 소송에서 이긴 후, 애플의 반 경쟁 행위를 걸어 역 제소했고, 손해와 명예 훼손을 위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이 주목되는 것은 애플이 유럽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⁵⁾ 관련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유럽 내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처럼 TR의 침해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 것은 나라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은 애초부터 논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삼성 전자와 애플의 제품을 동시 비교해보면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지만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패드1의 규격은 242.8 x 189.7 x 13.4m/m인 반면, 갤럭시 탭 7.0은 193.7 x 122.4 x 9.9m/m으로 크기와 두께가 다르다. 무게도 아이패드 1은 730g, 갤럭시 탭 7.0은 345g로 역시 차이가 난다. <사진 1, 2 참조>

결론 : 디자인권 보호, 양날의 칼

이제 세계 가전산업 거인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어떻게 결말지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앞에서 논의한 TR의 본질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분쟁의 관전 포인트들 중 하나는 정말 디자인을 모방한 것인지? 모방을 했다면 의도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아이패드를 사려는 소비자가 갤럭시탭을 아이패드로 오인하여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유사하게 디자인했느냐는 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특정 디자인을 모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편하게 스마트폰을 디자인하려면 꼭 지켜야하는 원칙을 따르다보니 생겨난

유사성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소송은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발효를 계기로 더욱 더 첨예화될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TR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TR은 제품의 외관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적한대로 첨단 디지털 제품들의 경우 TR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디자인 지침이 특정 회사의 지식재산이 됨으로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자칫 소송에서 패하면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보호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목록 (References)

- 김용 지음, 2010 디자인보호법 (개정 3판), 법학원, 2009
- 위키백과, 지식재산권
- 정경원, 디자인경영 이야기, Brand Acumen, 2010
- 최근우 외 지음, 코어 디자인 보호법, 한빛 지식소유권센터, 2005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음, 특허의 이해. 1: 창출 보호, 박문각, 2011 2011. 12 |

3)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s., Inc., 529 U.S. 205 (2000), http://www.law.cornell.edu/supct/html/99-150_ZS.html
 4) Karen Feisthamel, Amy Kelly and Johanna Sisteck, "Trade Dress: Best Practices for the Registration of Product Configuration Trade Dress with the USPTO," 95 The Trademark Reporter 6, Nov.-Dec. 2005, <http://home.comcast.net/~jlw28129/TradeDress101.pdf>
 5) 200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EU에 소속된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산업 디자인권.

특허전쟁 “드러남과 바라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배경과 원인, 이 두 회사의 특허전쟁 진행과정과 전망, 교훈 및 시사점

“Wo aber Gefahr ist, wächst
Das Rettende auch.”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
구원도 함께 자라네”(프리드리히 뢰들린)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 세계를 휩쓸었다. 금융 위기의 파급력은 전 세계 실물경제에도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연합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를 기록 중인 이탈리아는 풍전등화에 빠졌다. 높은 물가, 이미 천정을 뚫은 가계 빚과 국가 채무, 낮은 고용률 등은 저마다 어둡고 고심하는 표정을 짓는다. 우리나라도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예외가 되지는 못했다. 몇몇 수출기업이 고통의 달콤한 혜택을 입고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물가상승의 고통을 지불한 결과인데다가 달콤함이 사라지자마자 닥칠 위기를 예고하기도 한다. 불경기와 물가상승과 소비침체는 정치적 불신이라는 풍선에 끊임 없이 바람을 불어넣는다. 돌파구가 필요하며 목마른 시대다.

그러는 사이에 모바일 IT 산업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애플’이라는 과격하고 맹렬하며 차별한 기업이 변화의 중심을 차지했다. 그들은 기술을 싸잡아 끌어내렸으며 어루만졌고 추파를 던졌다. 오랫동안 여러 제조사들이 잘 직조해 놓은 장벽은 그들에 의해 찢겨졌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이 열린 것이다. 2007년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을 열어젖혔고, 2010년 아이패드는 태블릿 PC 시장으로 가는 길을 개

적했다. 전문가들은 비판했으나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경쟁자는 당혹했으나 애플은 승승장구했다. 애플은 글로벌 경제위기 가운데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기업이 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을 적는 곳에 응당 애플의 이름만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다. 그 순간 ‘구글’은 자기 이름을 먼저 크게 써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구글의 응용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는 패닉에 빠진 제조사들의 투지를 살려줬다. 애플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자신의 문을 정비하는 사이에 안드로이드를 장착한 제조사들은 벽을 부수며 문을 만들고 앞질러 나갔다. 그들 중 근년에 가장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는 이름으로 삼성전자, HTC가 있다. 한편 구글은 잊혀져 가던 모토로라를 호명했다. 호명에 필요한 대가는 무려 125억 달러였다. 안드로이드 진영은 발 빠르게 애플을 앞질렀다. 애플이 여전히 자기 앞마당을 한가히 쓸고 있을 때 어느 조용한 손길이 방명록을 들추기 시작했다. 절치부심한 마이크로소프트사다. 그들은 삼성전자와 HTC 바로 옆에 자기 이름을 자신감 있게 써 내려갔다. 노키아가 그 이름을 큰소리로 읽었다. RIM(리서치 인 모션)은 자기 이름을 불안한 듯 괜찮은 듯 ‘블랙베리’라고 조용히 적었다. 이렇게 이름을 적는 데에만 4년이 걸렸다. 몇몇 기업은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그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 LG전자가 포함됐다.

활짝 열린 평원으로 접어드는 길이 여기 있다. 하지만 주자들은 모두 앞다투어 쫓는다. 이 병목의 길에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질주한다. 바람보다 더 빨리 넘어지고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 모두 무리를 지어 싸우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글로벌 특허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드러남을 바라보는 시선

격변기 시대는 글로벌 특허전쟁으로 드러났다. 이 드러남을 바라봄에 있어 시급한 것은 실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존을 바라볼 우리의 시선이다. ‘특허’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한 쪽 면만을 천착해서는 그 입체를 알 수 없다. 모름지기 전문가가 자기 분야만을 보려고 하고 그 화두를 꼭 붙잡음으로써 자기 전문성을 드러내려고 욕망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전문성의 터무니 없는 과잉을 낳고 높에 빠진다. 당면한 특허전쟁이 비즈니스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특허전쟁이 곧 비즈니스 전쟁임을 알아챌 수 있다.

특허법을 포함한 지식재산법률은 기술과 법률과 경영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융합된 법률이며, 이 중 경영이라는 요소가 다른 두 가지 요소에 영감과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가장 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고된다. 이 분야 많은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기술과 법률의 융합만을 바라봤다. 하지만 경영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언제나 불충분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회사 경영에 관련된 법률 중에는 상법이나 여러 회사법이 있다. 여러 가지 행정법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준법과 탈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준법의 의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적법 아니면 탈법이다. 하지만 특허법은 그렇지 않다. 전략적으로 접근되고 분석되며 활용된다. 심지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조차 경영전략적 차원으로 고려된다. 특허권 침해라는 위법 상황은 라이선스 합의에 의해 적법해진다. 강력한 권리자도 비즈니스가 소멸함에 따라 그 지위를 잃는다. 일단 송사가 벌어지면 법원이 무엇이 정의인지를 놓고 판가를 하겠지만 법원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자잘한 물줄기들을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 시장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송사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셈이다. 나무와 숲을 함께 바라본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동향

스마트폰 시장과 태블릿 PC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이 시장은 IT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모든 모바일 산업을 뺀아들일 정도의 규모와 파급력을 보였다.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격화는 특허전쟁을 촉발하는 주요한 동인이다. 경쟁의 파열이 커질수록 경쟁자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특허라는 강력한 권리에 손이 가게 마련이다. 수십 개의 제조사가 저마다 자신이 보유한 수천, 수만 개의 특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쟁의 분위기는 무르익게 된다. 특허권자들의 면면과 특허의 현황만 놓고 보자면 지금이나 과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이 시점에 전래 없는 특허전쟁이 활화산처럼 불타고 있는가? 시장에는 무릇 앞선 자와 뒤쫓는 자와 강자가 있다. 그들은 모두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시장은 예측 가능한 정도에서 그들의 경쟁을 관전한다. 경쟁자들은 소리소문도 없이 그들의 창고에 특허라는 날 선 무기를 쌓아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무기고는 가득 찬다. 하지만 그들은 통 싸우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자이며 특허 측면에서도 서로가 강자인데다가 특허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뒤흔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에서 난공불락의 1위였으며 보유 특허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져들면서 시장에서의 앞선 자, 뒤쫓는 자, 강자의 순서가 급변하게 되고, 새롭게 앞서 나간 자가 보유한 특허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 대개 특허강자이기도 한 — 경쟁자들은 자신의 무기고에서 특허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듯 시장의 강자와 특허의 강자가 불일치하는 순간 특허전쟁이 발발한다.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전쟁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된다.

노키아가 2009년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걸었다. 애플은 2010년 봄 대만의 HTC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다. 애플은 또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토로라는 애플에게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먼저 선공을 가했다. 그때가 2010년 10월이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모토로라와 전혀 다른 대응을 택했다. 그들은 침묵했다. 그 결과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대대적이고 역사적인 포문을 열었다. 바야흐로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결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애플은 노키아와의 특허소송을 화해로 정리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전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권토중래를 피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의 강력한 특허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진영을 조용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HTC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대가로 구글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다. 애플은 이 분야 후발주자로서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싸우고 견뎌야만 했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협상전략으로 접근했다. 구글은 글로벌 특허전쟁의 배후에 있었다가 2011년 여름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로 전격 인수함으로써 전면에 얼굴을 내밀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흥미로운 소송의 개시

2011년 4월에 개시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역사적이고 흥미로운 소송전이다. 9개국으로 변진 전면전 이어서 그 규모와 비용이 우선 흥미롭다. 한 당사자는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애국심을 자극하고 다른 당사자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라서 감정이입까지 보이기도 한다.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고 반독점행위까지 이르고 있어서 소송의 내용 자체도 넓다. 글로벌 기업의 특허소송 중에서 이 소송처럼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쟁점이 형성된 소송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싸움이 돋보이는 까닭은 다른 데 있다. 두 회사는 한편으로는 서로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협력기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계 1위와 2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이라는 점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며, 2011년 추산 9조 원의 부품을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왜 시작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싸움을 건 당사자인 애플에게 물어보는 것이 순리가 되겠다. 우선 우리는 애플이 삼성전자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점을 잊지 말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경쟁자들 중에서 애플하고만 상대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접근하자면 애플의 입장에서는 밀질 것이 없는 싸움이였다. 이기면 좋고 밀리면 '협상'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라는 점은 애플에게 좋은 퇴로가 확보된 싸움이였다. 한편 이 특허소송이 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배경 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줄져 「특허전쟁」은 본 글을 보완한다) 다만 애플의 창은 단지 삼성전자만을 겨누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전략 선택의 기로에서

주지하다시피 애플은 새로운 세계를 제시했고 이것을 실천했다. 그리고 예상을 초월한 충격이 시장에 전해졌다. 선행주자들은 애플이 제시한 신세계에 어떻게 응전할 것

인지 그 선택을 강요 받았다. 자기가 걸어온 종전의 길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 선택을 미뤘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애플은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게 됐고 여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회사의 선택을 보게 된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애플이 열어 놓은 길목에서 애플보다 더 빨리 달리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하드웨어를 안드로이드 OS에 최적화하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반면에 LG전자는 픽쳐폰이 그렇게 빨리 몰락할 줄 몰랐고 오히려 하드웨어 기기의 장점을 경쟁력으로 삼으려고 했다. 선택의 결과는 바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시대의 갈림길에서 눈부신 실적을 거뒀고 특허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다. 반면에 LG전자는 거둬들인 적자에 고심하고 있으며 작금의 시장과 특허전쟁에서 존재감을 잃고 말았다.

삼성전자가 선택한 길에 도사리는 위험과 파편화된 통찰력

삼성전자가 선택한 길은 요컨대 애플과 유사하게 가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사'라는 표현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 어차피 그렇게 선택한 경영전략이라면 과감할 필요가 있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주자가 됨으로써 애플과의 특허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선택의 대가이다. 이런 경영전략이라면 삼성전자 내부 조직은 두 가지 과업을 임무로 부여 받게 된다. 첫째 자기의 특허 무기고에서 애플을 공략할 수 있는 최선의 특허를 찾는 일이고, 둘째 애플이 어떤 특허로 공격해 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다.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이런 작업은 '성과(output) 없는' 일이며, 그것도 장시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경영전략이 어떤 길을 선택했다면 기업의 조직 — 여기서는 특허전담부서(IP 센터) — 은 그 길의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이 역할의 첫 번째 국면은 '위험감지자'이며, 두

번째 국면은 '문제해결사'이다. 무릇 전자는 다가오는 문제를 예방하고 준비하는 역할이며 후자를 빛나게 한다. 어떤 경영전략이든 간에 위험을 인식하고 미리 방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내부 조직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해프닝을 의미한다. 해프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조직이 하는 일이다. 모니터링 요원 — 그가 변리사이든 아니든 —의 통찰력이 빛과 어둠을 가를 경계의 안팎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은 인식되는 순간 둥글고 순해지기 마련이다.

일반인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대부분의 특허 전문가들이 디자인특허와 상표권의 법리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환기하자. 지나친 전문화와 분업화가 가져온 폐해이기도 하다. 우선 이게 내부적인 위험이다. 개인의 통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이 있는 법이므로, 삼성전자 내부 조직이 파편화된 통찰력을 얼마나 잘 조합할 수 있느냐가 이 모니터링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패한다면 내부 위험은 증대될 것이다. 장차 회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경영전략이 어떤 결단을 내린다. IP 팀은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 엄청난 비용을 써가며 — '문제해결사'를 자임한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말하자면, 그 비용은 그 팀의 연봉의 총합보다 더 절감될 수 있는 문제였다. '위험감지자'는 서툴고 낯설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만일'이라 함은, IP 팀이 제 역할을 잘 해서 애플이 갖고 있는 외관의 관한 권리를 잘 인식하고, 분석하고, 보고함으로써 그 위험을 삼성전자의 제품 디자인 개발팀에 잘 반영했다더라면 굳이 애플과 지금 수준으로 싸울 이유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조직 간의 소통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애플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애플이 특허공격을 해 오면 그 특허공격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 (선부른 크로스 라이선싱을 염두에 둔 '우리 특허' 공격이 아니라) 애플이

대만의 HTC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개시한 게 2010년 봄이었고, 모토로라와는 그 해 가을에 소송을 시작했다. 다른 경쟁자의 소송시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애플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요컨대 삼성전자로서는 애플과의 싸움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애플의 특허소송을 '진주만공습'에 비유할 일이 아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을 두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디자인특허가 갖는 파급력과 기술특허와의 차이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해 기술특허의 침해, 디자인특허의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여러 나라에 걸쳐 이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쟁점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특허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리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자체가 낯선 소송인 셈이다. 사실 전문가도 '기술특허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머릿속 프레임에는 '기술'이 당연히 '디자인'보다 우월하고 힘이 있으며 강렬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디자인특허의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마치 도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공격이 된다.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것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률을 적용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오인 혼동 여부'를 주로 심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표권침해를 규제하는 법률과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사익(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익(소비자의 보호)을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외관과 관련된 것이어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모두 제품(혹은

제품의 포장)의 ‘외관’에 관련된 법률이다.

물론 기술특허도 침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만, 이것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보다는 특허권자의 사익을 경쟁관계에 있는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침해자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는다. 특허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특허를 살펴보고 무서운 특허가 도사리고 있으면 일단 제품 출시 전에 그 특허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일단 경쟁사의 특허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제품 설계자체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다. 어떤 특허를 인지했음에도 그것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런 경우도 통상 그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놓고 대비하려고 노력한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허들을 모두 인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복잡한 기술내용이 다양한 언어로 어렵게 표현된 그 많은 특허들을 어떻게 모두 인지한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특허침해를 해서 모방 제품을 만든 경우는 사실 드물다. 특허침해사건의 대부분은 그 특허의 존재여부를 몰랐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들이다. 실제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이 이렇다는 사실도 우리가 특허침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렵게 한다. 표준기술의 경우에는 애당초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하도록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후발주자가 선행주자의 인기 제품을 ‘모방’ 할 때에는 가급적 소비자들에게 선행주자의 제품에 갖는 신뢰성에 편승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 제품이 일단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게 되면, 후발주자는 그 제품의 외관과 유사하게 디자인

인해서 제품을 출시하고픈 유혹에 빠진다.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일단 후발주자는 자기에 앞선 타인의 디자인을 ‘인식’하고 ‘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특허보다 도덕적 비난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특허의 경우 타인의 특허의 존재여부를 잘 모르지만 디자인특허의 경우 타인의 디자인의 존재여부를 잘 안다는 것이다. 요컨대 법적으로는 기술특허보다 악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셈이다.

한편, 권리침해 파급효과에 있어 기술특허를 침해하든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든 모두 판매금지판결을 받을 수 있다. 모두 권리이고 동등하게 보호받게 된다. 상표권침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권리 침해가 있고, 그것에 대해 응당한 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기술특허, 디자인특허,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모두 특별한 차이점이 없게 된다. 권리침해의 파급효과는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특허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것보다, 디자인특허나 상표권 등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더 괴롭다. 동등한 판매금지의 위협이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서 도덕적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이다. ‘모방품’이라는 공격이다.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일수록 더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정말 강력하며 타협하기도 대응하기도 어렵다. 외관이 유사하다고 해서 법적인 분쟁을 했는데 ‘외관을 공유하자’고 협상하기란 참 어려운 노릇이다. 즉 디자인 특허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좁다. 삼성과 애플처럼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특허로 싸울 때에는 다양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 특허는 어느 한 개의 회사에 독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도 협상의 여지를 넓혀준다. 요컨대 ‘특허의 분산효과’이다. 하지만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협상하거나 물러서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들이 보기에 서로 비슷하다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소비자’들이 비슷해도 괜찮다고 하기가 좀 어렵고, 물러서자니 모방품임을 인정하는 듯해서 브랜드 이미지와 자존심 문제가 걸리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낯선 충격이 생겼고, 이제 ‘디자인특허’도 다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다.

표준특허와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소송 쟁점

한편,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필연적으로 ‘표준특허’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로 무선통신 기술의 표준특허를 사용했다. 삼성은 여러 대륙의 법원을 누비며 애플의 제품이 자기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특허는 이른바 ‘표준’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 공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운명이며, 마치 이 전쟁은 삼성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것 같았다. 애플이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표준특허는 곧 승전보를 의미했다. 하지만 승전보를 전해줄 전령은 마라톤 평원을 건너오지 않았다.

삼성이 표준특허를 이용해서 저 자존심 높은 경쟁자를

‘포박’하려고 했으나 실상 표준특허의 진정한 의의는 포박이 아니라 ‘약수’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표준기술은 여러 기술들을 모아놓고 약속한 규범이고 그것이 비즈니스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기술이라서 누구에게나 기술 사용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게 되었다. 누구든지 표준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보니 ‘특허문제’가 생긴다. 표준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표준특허’의 문제, 즉 표준기술에 관련된 특허의 문제이다. 표준기술이 문턱을 낮추고 문호를 활짝 개방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는 반면에 특허라는 제도는 배타적인 권리여서 결과적으로 표준기술의 취지와 특허 간의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자는 어쨌든 특허권자다. 특허권자이므로 자기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표준특허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므로 특허침해를 피하기 어렵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기 두드리기 유혹에 빠진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표준특허에서 ‘특허’만 강조될 뿐, 표준기술의 ‘표준’이 간과되기 쉽다. 그래서 표준기술은 표준특허권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첫째 표준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멤버는 자신의 특허들을 숨기거나 늦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둘째 FRAND 규정(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부여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이는 반독점법을 호명한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법률로서 보장해준다. 하지만 특허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권리행사는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시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소송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애플은 각 나라의 법정에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을 소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를 감쌌으며,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여 FRAND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법원에서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가 FRAND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난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쟁법 위반행위, 즉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게 된 시발점이 됐다. 어쨌든 반독점법은 소환된 상태다.

이 소송에서 표준특허를 둘러싼 쟁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한국 등에서 아직 재판 중에 있다. 몇몇 나라의 법원에서는 애플에게 유리하고 또 몇몇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두고 볼 일이다. 한편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현재 표준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례인 독일 대법원의 2009년 ‘오렌지 북 케이스’가 언급됐고 이는 삼성전자에게 국면을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렌지 북 케이스가 이 두 회사의 소송 전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그 사실관계와 법리를 좀더 지켜볼 일이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삼성전자와 퀄컴 사이의 협약서류, 소송 전후로 진행된 양사의 로열티 협상 내용 등이 앞으로의 표준특허 쟁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이나 최종심급까지 갈 것이냐

이 특허전쟁은 협상을 통해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MS와 애플과 모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격변하는 시장에 안정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큰 틀의 경영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삼분지계하고 있는 이 세 업체와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제조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영전략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 싸움을 먼저 건 당사자가 아니고 애플과는 연간 9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 애플의 입장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중요한데다가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와중에 모토로라가 구글 손에 넘어갔으므로 모토로라와의 특허소송이 더 시급하고 중요해진 상황이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모토로라와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고 모토로라와의 소송에 좀더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때문에, 지난 10월에 삼성전자가 4건의 새로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전을 꾀했음에도 별다른 추가 공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두 회사가 적절하게 협상하라는 취지여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계기가 충분히 확보됐고, 삼성전자도 제품의 외관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 애플은 이미 소송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는 점 등은 협상의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더욱이 이 특허전쟁이 상대방의 생태계 자체를 뒤흔드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며 (반면에 모토로라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제품을 속속 출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송은 점점 더 과거의 소송을 띠게 되므로 소송을 질질 끌 까닭도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독점조사와 미국 판결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이 특허전쟁은 화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단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가 남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특허전쟁이 이전의 특허소송과 다른 점은 디자인 특허와 상표권 침해 등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자면 소송이 정점을 찍을 때에 극적으로 화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사 모두 위험했으나 동반자 관계로 화해했다는 시나리오이다. 협의의 내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상대방 특허를 서로 이용하는 통상의 크로스 라이선스는 아닐 것이다. 애플의 회사 특성을 고려하건대 자신의 특허를 삼성에 라이선스를 주기 보다는 자기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이 회피설계하도록 하고,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특허와 현금

이 특허전쟁을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특허의 개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단견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글로벌 기업의 특허소송은 특허의 개수로 유효리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 소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는 게 아니다. 글로벌 공룡기업 간의 특허소송이다. 모두 충분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극히 충분하다’와 ‘충분하다’ 정도라면 미차에 불과하다. 애플의 특허개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현금을 과소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한편 애플은 8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은행에는 날마다 현금이 쌓인다. 2011년 여름 애플은 MS 등과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캐나다 통신회사인 노텔의 특허 6,000건을 매수했다.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 이후의 일이다. 노텔의 특허를 매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공격무기로 활용될 만한 특허를 막대한 현금을 동원하여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마치 구글이 125억불을 지불하여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2011년 8월에 인수합병한 것처럼 말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전쟁에서는 특허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소송이 전개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특허를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 전략상의 선택 능력과 묘미가 더 중요할 것이다. 소송 그리고 협상에 동원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특허의 개수가 중요하지 단지 누가 유리한지를 놓고 특허의 개수를 따지는 것은 단견에 불과하다.

드러남과 바라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격변하는 시대를 읽는다. 법적으로는 디자인특허의 중요성과 표준특허에 대한 재인식이 분명해졌다. 조직적으로는 경쟁사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연후에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보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는다. 또한 특허를 특허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으로 바라봄의 시선을 넓혀야 함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드러남이다. 드러남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격동하는 모바일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즈음하여 이 특허전쟁이 갖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다.

첫

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시대적 변화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고 할 때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의 강자들이 소프트웨어 강자들에게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과 MS가 전세계의 모바일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의 도래이다. 삼성전자의 이견희 회장이 소프트웨어의 인력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산업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산업이 어디에 더 힘을 쓸 것인지, 어디를 더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물음이 던져졌다.

둘

째, 제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삼성전자가 전자를 표상했다면 애플은 후자를 표상하고 여기에 오늘의 삼성전자가 동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특허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가 자랑하고 싶은 하드웨어 기기의 성능과 효율보다는 소비자가 만족하고 매료되는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혹독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애플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애플이 선택한 길을 함께 가려는 — 구글의 지원을 받아 — 삼성전자나 HTC의 성장도 눈부시다. 반면에 소비자 경험보다 제조사의 기술과 스펙을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사용자 환경, 콘텐츠, 디자인 같은 것들이 기기와 부품 자체의 성능 같은 것들보다 우선시 된다. 좀 더 좋은 부품보다는 좀 더 좋은 사용자 환경이 더 중요해졌다.

셋

째, 기술에서 예술로, 보다 정확하게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는 시대로의 전이이다. 마르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과 예술은 본질이 같다고 한다. 그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오 놓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은 예술과 분리되어 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예술은 변방으로 물러났다. 기술중심주의가 한계에 봉

착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더라도, 경쟁자 간의 기술의 격차가 크지 않고 그래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점점 더 낮은 수익률로 기울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기술이란 언제나 스스로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자기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기업은 모바일 산업에서 그 존재감을 잃고 말았다.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노릇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드디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기업이 됐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애플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만, 기술을 하는 기업과 예술의 하는 기업의 접근이 다르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반면에 애플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우리 한번 예술을 해보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술자의 열정과 예술가의 열정에는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다행히도 이런 드러남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좋은 시대적 환경을 제공한다. 하드웨어 중심, 제조자 중심, 기술 중심의 시대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가 없고, 후발주자가 선행주자와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중심, 소비자 중심, 예술 중심의 시대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힘’을 뜻하며, 그것은 어떤 시대적 변화에도 ‘특허활동’을 통해 자기 옷을 입게 된다. 2011. 12 |

Oracle Vs. Google 특허분쟁

오라클은 지난해 자바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오라클은 이번 특허소송에서 자바표준기술에 대한 특허 7건을 구글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병 년 선임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



최 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특허전쟁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전쟁이다.

오라클은 지난해 자바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당초 두 업체의 소송전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 오라클이 해당 소송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해당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6월)

오라클은 최초 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구글에 요구했고, 구글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오라클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2011년 9월 20일, 21일 양사의 대표들이 만나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

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오라클이 당초 61억 달러 피해배상액에서 한 발 물러나 11억 6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1억 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글이 말하는 '1억 달러'는 법원에서 오라클과 합의를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며 자신들은 여전히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라클이 61억 달러라는 엄청난 피해배상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물론, 최초로 피해배상액을 최대한 부풀려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협상에서 요구한 11억 6천만 달러라는 금액 역시 엄청난 금액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바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이번 특허소송에서 자바표준기술에 대한 특허 7건을 구글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istory

오라클은 2010년 자바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그해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구글이 만든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우리의 자회사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자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 "구글은 오라클의 139개의 특허 청구항을 침해했으므로 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오라클이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구글은 반박에 나서며, "안드로이드는 썬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우리가 사용한 자바기술들은 이미 오픈소스에 가까운 것들이다", "안드로이드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의 아파치 하모니 자바 임플리멘테이션(Apache Harmony Java Implementation, AHJI)의 서브셋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구글 스콧 바



인개트너 고문변호사는 "오라클이 우리에게 요구한 61억 달러의 피해배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 "그 이전에 61억 달러가 오라클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구글은 연방법원에 "오라클이 14~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책정한 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라클이 요구한 금액에 대한 반박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1년 9월 20일, 21일 양사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바표준 vs AHJI

AHJI(Apache Harmony Java Implementation)는 아파치 하모니 프로젝트에서 나왔고 ASF(Apache Software Foundation)가 개발하였다. ASF는 자바기술표준협회(JCP)에 소속돼 있었는데,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오픈소스인 자바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더 이상 함께 활동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며, 2010년 11월 JCP에서 탈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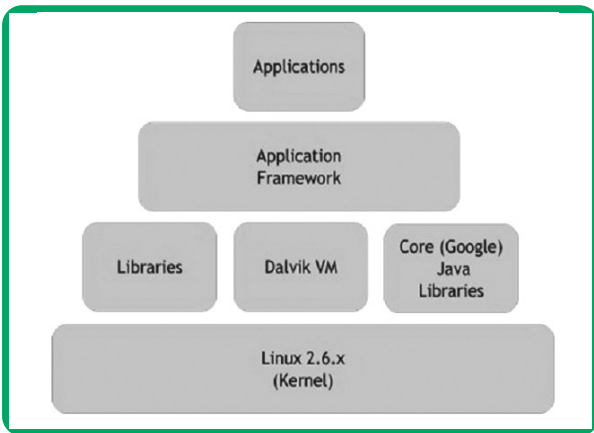
썬은 2007년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Java SE)를 GPL(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로 공개했고, 그 이후 오픈소스라고 불리게 된다.(ASF는 썬이 자바를 공개하기 전부터 자바를 오픈소스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썬은 자바 모바일 에디션(Java ME)와 자바 엔

터프라이즈 에디션(Java EE)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모바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달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글은 썬의 자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AHJI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오라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글이 자신들의 자바 코드를 사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우리는 달빅가상머신 쓴다” Vs 오라클 “그것도 우리 기술 침해”¹⁾



구글이 자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AHJI도 있지만 기저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달빅가상머신이 깔려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달빅가상머신(DVM)은 구글에서 자바가상머신(JVM)을 기초로 만든 새로운 가상머신인데, 레지스터 머신형태를 띄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에 탑재되어 있다. 달빅가상머신은 자바가상머신과 달리 낮은 메모리에서도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가상머신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달빅가상머신에서 구동되는 코드(.dex)는 자바가상머신에서 돌아가는 코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바가상머신과 달빅가상머신은 다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라클은 달빅가상머신이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기초로 JNI(Java Native Interface), OEM(자바 API)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청문회에서 오라클 담당 변호사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자바 내에서 코딩을 하고, 컴파일러를 통해 코드를 실행하는데, 비록 코드는 자바 가상머신이 아니라 구글의 달빅가상머신에서 구동되는 .dex 파일로 변환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특허 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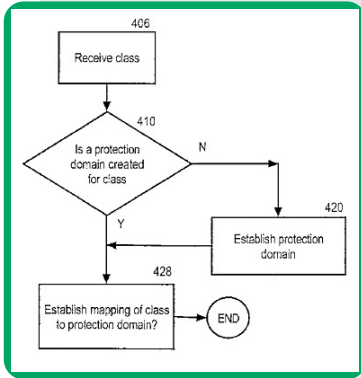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년도
1	6,125,447	Protection domains to provide security in a computer system	1997
2	6,192,476	Controlling access to a resource	1997
3	5,966,702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1997
4	7,426,720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2003
5	RE38,104	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d code	1999
6	6,910,205	Interpreting functions utilizing a hybrid of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2002
7	6,061,520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1998

■ 분쟁특허 요지 리스트

NO. 1	US6125447		
발명의 명칭	Protection domains to provide security in a computer system		
출원번호	988439		
출원일	1997.12.11	출원인	Sun Microsystems
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	H04L9/00	공개번호	

보호 도메인을 사용하여 보안 룰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

A method and apparatus are provided for maintaining and enforcing security rules using protection domains. As new code arrives at a computer,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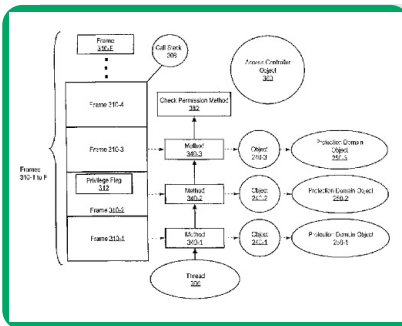
determination is assigned to a protection domain based on the source from which the code is received. The protection domain establishes the permissions that apply to the code. In embodi-

ments where the code to be executed by the computer belongs to object classes, an association is established between the protection domains and the classes of objects. When an object requests an action, a determination is made as to whether the action is permitted based on the class to which the object belong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classes and protection domains.

determination takes into account the sources of the code on the call stack of the principal at the time the access is desired. Because the source of the code on the call stack will vary over time, so will the access rights of the principal. Thus, when a request for an action is made by a thread, a determination is made of whether the action is authorized based on permissions associated with routines in a calling hierarchy associated with the threa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request is authorized is based on a determination of whether at least one permission associated with each routine encompasses the permission required to perform the requested action. Support for "privileged" routines is also provided. When a routine in the calling hierarchy is privilege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is authorized is made by determining whether at least one permission associated with each routine between and including the privileged routine and a second routine in the calling hierarchy encompasses the permission required to perform the requested action.

NO. 2	US6192476		
발명의 명칭	Controlling access to a resource		
출원번호	988431		
출원일	1997.12.11	출원인	Sun Microsystems
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	H04L9/00	공개번호	

NO. 3	US5966702		
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출원번호	961874		
출원일	1997.10.31	출원인	Sun Microsystems
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	G06F17/30	공개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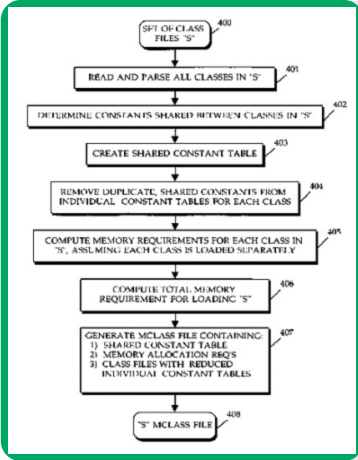
principal(e.g. thread)이 특별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A method and system are provided for

determining whether a principal (e.g. a thread) may access a particular resource. According to one aspect of the invention, the access authorization

전처리 및 클래스 파일 패키징을 위한 방법 및 장치.

A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Embodiments remove duplicate information elements from a set of class files to reduce the size of individual class files and to

1) 출처 : 디지털데일리, [구글vs,오리클]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되다, 이민형 기자, 2011.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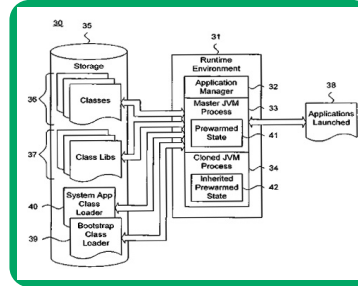


prevent redundant resolution of the information elements. Memory allocation requirements are determined in advance for the set of classes as a whole to reduce the complexity of memory allocation when the set of classes are

loaded. The class files are stored in a single package for efficient storage, transfer and processing as a unit. In an embodiment, a pre-processor examines each class file in a set of class files to locate duplicate information in the form of redundant constants contained in a constant pool. The duplicate constant is placed in a separate shared table, and all occurrences of the constant are removed from the respective constant pools of the individual class files. During pre-processing, memory allocation requirements are determined for each class file, and used to determine a total allocation requirement for the set of class files. The shared table, the memory allocation requirements and the reduced class files are packaged as a unit in a multi-class file.

NO. 4	US7426720		
발명의 명칭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출원번호	745023		
출원일	2003.12.22	출원인	Sun Microsystems
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	G06F9/45	공개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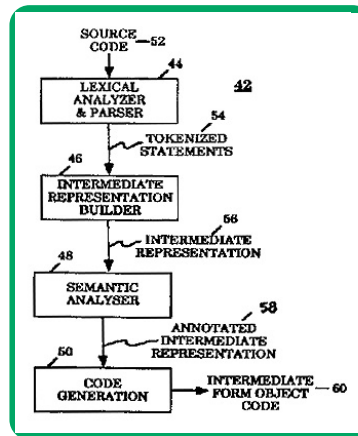
마스터 실시간 시스템 과정의 메모리 영역 클로닝을 통한 클래스의 동적 preloading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A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is presented. A mas

ter runtime system process is executed. A representation of at least one class is obtained from a source definition provided as object-oriented program code. The representation is interpreted and instantiated as a class definition in a memory space of the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The memory space is cloned as a child runtime system process responsive to a process request and the child runtime system process is executed, inheriting the memory state of the parent, which reflects the data structures and state corresponding to the preloaded classes.

NO. 5	US RE38104		
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d code		
출원번호	261970		
출원일	1999.03.03	출원인	Sun Microsystems
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	G06F9/45	공개번호	



소스 프로그램 코드를 컴파일링하는 컴파일러와 컴파일된 코드를 인터프리팅하는 인터프리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컴파일러-인터프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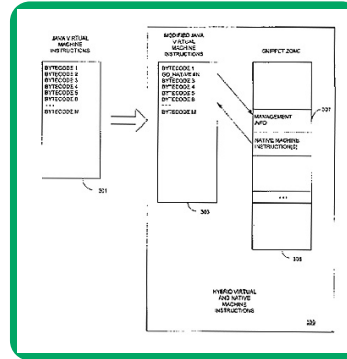
A hybrid compiler-interpreter comprising a compiler for "compiling"

source program code, and an interpreter for interpreting the “compiled” code, is provided to a computer system. The compiler comprises a code generator that generates code in intermediate form with data references made on a symbolic basis. The interpreter comprises a main interpretation routine, and two data reference handling routines, a dynamic field reference routine for handling symbolic references, and a static field reference routine for handling numeric references. The dynamic field reference routine, when invoked, resolves a symbolic reference and rewrites the symbolic reference into a numeric reference. After re-writing, the dynamic field reference routine returns to the main interpretation routine without advancing program execution to the next instruction, thereby allowing the rewritten instruction with numeric reference to be reexecuted. The static field reference routine, when invoked, obtain data for the program from a data object based on the numeric reference. After obtaining data, the static field reference routine advances program execution to the next instruction before returning to the interpretation routine. The main interpretation routine selectively invokes the two data reference handling routines depending on whether the data reference in an interaction in a symbolic or a numeric reference.

NO. 6	US6910205		
발명의 명칭	Interpreting functions utilizing a hybrid of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출원번호	194040		
출원일	2002.07.12	출원인	Sun Microsystems
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	G06F9/45	공개번호	

기능을 위한 가상 머신 명령어의 실행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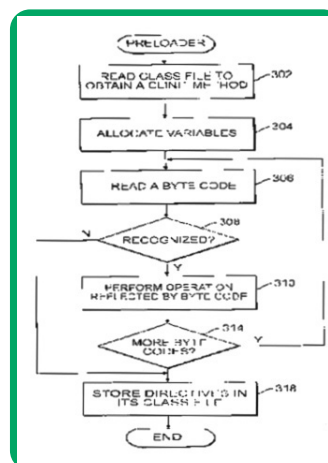
Systems and methods for increasing the execution speed of virtual machine instructions for a



function are provided. A portion of the virtual machine instructions of the function are compiled into native machine instructions so that the function includes both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Execution of the native machine instructions may be accomplished by overwriting a virtual machine instruction of the function with a virtual machine instruction that specifies execution of the native machine instructions. Additionally, the original virtual machine instruction may be stored so that the original virtual machine instructions can be regenerated.

NO. 7	US6061520		
발명의 명칭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출원번호	942292		
출원일	1998.04.07	출원인	Sun Microsystems
우선일		우선권주장번호	
IPC	G06F3/00	공개번호	



어레이를 정적으로 초기화하기 위한 가상 머신에 의해 실행 코드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적 배열을 초기화하기 위한 종래의 시스템을 개선함

The disclosed system represents an improvement over conventional systems for initializing static arrays by reducing the amount

of code executed by the virtual machine to statically initialize an array. To realize this reduction, when

consolidating class files, the preloader identifies all <clinit> methods and play executes these methods to determine the static initialization performed by them. The preloader then creates an expression indicating the static initialization performed by the <clinit> method and stores this expression in the .mclass file, replacing the <clinit> method. As such, the code of the <clinit> method, containing many instructions, is replaced by a single expression instructing the virtual machine to perform static initialization, thus saving a significant amount of memory. The virtual machine is modified to recognize this expression and perform the appropriate static initialization of an array.

맺음말

지금까지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분쟁에서 제기되었던 썬 마이크로시스템의 자바기술 특허 7건과 특허분쟁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라클은 자기의 자회사인 썬마이크로시스템의 자바표준특허 7건에 대해서 139개 청구항을 구글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라클이 침해를 주장하는 139개의 특허는 미국특허청에서 재심 과정을 통하여 청구항 수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미, 미국특허청은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가 침해했다는 7개의 특허 중 1개의 특허를 심사한 결과 21개의 청구항 중 17개의 청구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고 밝혔다. 구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4개의 청구항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남은 6개의 특허들 내에 118개의 청구항들도 재심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구글로서는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라클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청구항이 삭제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설령 7건 중 2~3건의 특허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4~5건의 핵심특허를 갖고도 충분히 구글을 압박할 수 있다.

그 핵심특허가 바로 표준특허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기기에 대해서 대당 15~20 달러를 로열티로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안이 현실화로 이어진다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미 현실화되어버린 MS의 특허공세에 더불어 오라클마저 특허로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려는 일련의 사태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본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특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많은 특허들을 잘 살펴보고, 특히 R&D와 관련 있는 특허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R&D에 적용한다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 좋은 특허, 특허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2011. 12 |

어린이 그림책 <달샤벳>, 걸그룹 이름으로 도용되다?

어린이 동화책 '달샤벳'가 걸그룹 '달샤벳'?
상표 출원 시 상품·서비스업 지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오 죽하면 책 한 권 만들면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 신청까지 했겠습니까?”

베스트셀러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40)씨는 최근 신작 <어제 저녁>(스토리보울 발행)을 출간하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부터 해야 했다. 그것도 뮤지컬, 애니메이션, 문구, 인형 등 '어제 저녁'이라는 제목이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말이다. 작

품에 나오는 인형 11가지를 전면, 측면, 후면 등 수십 장 사진을 찍어 디자인 등록도 출원 신청했다. 여기에 든 돈만 400만 원이 넘었다. 백씨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연예기획사가 작년 8월 자신이 출간한 전작 <달샤벳>의 이름을 도용해 '달샤벳'(Dalshabet)이라는 이름의 걸그룹을 데뷔시켰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해 만든 제 작품이 걸그룹의 이름으로 온통 인터넷을 도배하는 것을 보면서, 죽어라 만들어 시궁창에 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샤벳>는 백씨가 1년 동안 안면마비까지 앓으며 만든 작품으로, 출간 이후 5개월 만에 3만 5,000부나 나가는 등 어



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백씨는 법적 대응도 알아봤지만 <달샤베트>가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해당 기획사에 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백씨는 “뮤지컬, 빵, 공연 등 달샤베트라는 이름이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일단 해놓았지만,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까지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애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백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기획사 측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집부터 그룹명 앞에 ‘the’를 붙이겠다는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전만 해도 “제목은 저작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었다. 그러나 백씨는 후배들을 위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거절했다. 백씨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7년 전 출간한 <구름빵>은 40만 권이나 팔렸지만, 백씨가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올린 수입은 850만 원이 전부다. 무명의 신인작가 시절, 출판사는 원고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책을 출판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인세는 단 한 푼도 못 받는 셈이다. 또 책과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출판사에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구름빵>을 소재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빵 등에 대해서도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백씨는 “작가에게 창작물을 빼앗는 건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아무리 작은 책이라도 저작권이 보호되고, 신인작가들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¹⁾

<달샤베트>는 이제 갓 5살이 된 우리 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아파트에 사는 동물 친구들이 너무 더워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반장 늑대 할머니가 달물이 푹푹 떨어지는 걸 보고 좋은 생각을 해냈다. 바로 달물을 받아서 달샤베트를 만들고, 만든 달샤베트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할머니가 만든 달샤베트를 먹은 동물 친구들은 그래서야

깊은 잠에 빠졌지만, 달이 녹아 없어져 달에서 살 수 없게 된 달토끼들이 반장 할머니를 찾아온다. 달토끼들을 가엾게 여긴 반장 할머니가 남은 달물을 화분에 부으니 달처럼 환하고 커다란 달맞이꽃이 피었다. 커다란 달맞이꽃은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잠시 후 새까만 밤하늘에 작은 빛이 피어나더니 그 빛은 점점 자라나 둥근 보름달이 되었다. 그리고 달토끼들은 이제 새로 살 집이 생겼다고 춤을 추며 달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독창적이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이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 섰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개인과 중소기업을 더 많이 대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깊이 느끼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예전보다는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조금은 느끼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을 미리미리 확보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있겠지만,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갑작스런 역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가 바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라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상표 출원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인 니스국제상품분류 중 필요한 상품분류를 지정하여 출원하게 되어 있는데 상품분류란 상품의 성질, 용도 등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업을 1류부터 45류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작가 백희나 씨의 경우 <달샤베트>를 상표출원하려고 할 때, 현재 <달샤베트>를 제호로 사용하고 있는 동화책, 그림책이 속하는 제16류를 지정하여야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는 바 애니메이션이나 웹으로 만든 만화가 속하는 제9류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완구류로 제작될 경우도 대비하여 완구류가 속하는 제28류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엔터테인먼트 사

번호	권역이미지	출원(국제등록) 출원(국제등록)일자	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주요분류 주요분류 주요분류 주요분류 주요분류 주요분류	도형코드	출원인
1	달사베트	4020100064351 (2010.12.15)	4020110082215 (2011.11.08)			공고	16		백희나
2	달사베트	4020100064353 (2010.12.15)	4020110082217 (2011.11.08)			공고	30		백희나
3	달사베트	4020100064352 (2010.12.15)	4020110082216 (2011.11.08)			공고	28		백희나
4	달사베트	4020100064349 (2010.12.15)				출원	09		백희나
5		7020100000669 (2010.11.05)	7020110076339 (2011.10.21)			공고	28 09	010701 030108 0703 25	백희나
6		4020100038939 (2010.07.26)	4020110034401 (2011.05.25)	4008804050000 (2011.09.14)		등록	16 30	010701 030108 0703 25	백희나
7		4120100028305 (2010.11.05)	4120110070304 (2011.10.04)			공고	41 43	010701 030108 0703 25	백희나

<2011.11.20 현재 '백희나' 씨 '달사베트' 출원 현황-키프리스 검색 화면 캡처>

업에 응용될 가능성까지 염두하자면 그 업종이 속하는 제 41류까지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지정한다고 하면 모두 4개류를 함께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표 출원을 위한 대리인(변리사) 비용이나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모두 지정한 상품 분류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출원 시 상품분류 1류당 20~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백희나 씨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필수적인 4개류 정도를 지정한다면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달사베트> 같은 동화책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워낙 사업 확장 가능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캐릭터 중 하나인 뽀로로의 경우에는 의약품, 식품류에까지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여러 개 상품분류에 상표 등

록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까지 처음 만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분들과 상표 상담을 해본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상표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상표권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는 쳐놓고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무용품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상표 출원 비용 때문에 부담을 갖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실제적인 팁을 하나 소개하겠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비용을 80% 지원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매년 3월 정도에 시작되며,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만 갖추면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에 드는 초기 비용을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를 잘 체크해 두기 바란다.

2011. 12 |



1) 2011.11.13 인터넷한국일보 기사 발췌

잠금기능이 구비된 맨홀

(주)한국주조

맨홀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있다.

(주)한국주조의 이상각 대표는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 뚜껑을 개발, 이제는 차가 지나가도 맨홀 뚜껑은 덜커덩 소리를 내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정말 그런 걸까?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집 앞 도로의 맨홀 뚜껑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덜커덩 소리를 낸다. 동네 주민 모두가 시끄럽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소음을 참는다.

덜커덩 끼익, 덜커덩 끼익

사람들이 덜커덩 소리에 익숙해 질 무렵, 작은 소리 하나가 더 추가된다. 맨홀 뚜껑을 잡고 있던 나사가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덜커덩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고만 느낄 뿐 맨홀의 나사가 풀려져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여름이 되고 비가 내린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린다. 어느덧 하수도가 막혀서 빗물이 도로로 넘쳐흐른다. 물이 제법 많이 차오르자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 맨홀 뚜껑이 몸을 살짝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우똥, 가우똥

몸을 풀며 자리를 이탈한 맨홀 뚜껑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채 신나게 떠내려가기 시작한다. 무게 63kg에 브레이크 없이 가속까지 붙은 단단한 맨홀 뚜껑은 사람들에게겐 부딪히면 큰일 나는 흥기로 변해 버린다.

뿐만 아니다. 뚜껑 없이 혼자 남겨진 맨홀 구멍은 자칫 바닥을 보지 않고 걸다가는 그대로 추락해 버릴지도 모르는 도심 속의 낭떠러지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가진 맨홀이지만 모두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건 그냥 맨홀이니까, 맨홀 뚜껑은 원래 저렇게 생긴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가 싫었던 거죠

여기 그런 맨홀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있다.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 뚜껑을 만들어 낸 (주)한국주조의 이상각 대표이다.

이상각 대표는 도로 위 수많은 맨홀들을 보며 맨홀 뚜껑



의 잠금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다. 잠금 장치가 헐거운 맨홀 뚜껑 위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덜컹거리는 소음도 문제였고, 맨홀 뚜껑의 헐거움이 더 심해져 뚜껑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 사고들은 더 큰 문제였다. 조용하고 안전한 맨홀 뚜껑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 뚜껑의 개발은 시작되었다.

우선 기존 제품들이 시끄럽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

맨홀 뚜껑의 외부와 틀의 내경에 나사산을 형성하여 나선 결합을 통해 잠금 되는 방식의 제품이 있었다. 이것은 맨홀 위를 지나가는 차량 바퀴의 마찰력에 의해 맨홀 뚜껑의 나선 결합이 해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할형 체결구로 체결된 주물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힌지가 연동되면서 틀의 경사진 단턱에서 이탈되어 열리고 손잡이를 내리면 힌지회동에 의해 폐쇄되는 방식의 제품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힌지회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통하여 오수 및 빗물이 유입되어 방수 기능이 떨어지고, 잠금을 위해 내부에 힌지 장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에 어려운 제조법, 높은 제조단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볼트로 뚜껑을 잠그는 방식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이 슬면 볼트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잠금 시 볼트를 강하게 조여야만 차량이 지나갈 때에 열리지 않고, 정작 열어야 할 때에는 잘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문제점을 깨닫는 것, 발전의 첫 걸음

결국 기존 제품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잠금 장치였다. 열고 닫기가 간단해야 하며 잠금 상태에서 잠금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한국주조에서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기술개발에 몰두했다.

간단하면서 잠금이 확실한 방법을 찾던 중 볼펜의 누름과 닫힘에 사용되는 스프링이 생각났다. 스프링의 탄성으로 잠금을 한다면 일정한 힘에 의해 잠금 상태가 유지되기도 쉬울 것이고, 만들어 내기에도 비교적 간단하기에 기존의 것에서 교체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술을 연구했다.

스프링을 이용한 연구는 성공적이었다.

반자동 스프링 잠금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

맨홀뚜껑의 잠금은 뚜껑을 덮고 사람이 올라서 밟으면 잠금이 이루어지고, 열림은 지그로 돌려 간단하게 열 수 있게 했다.

잠금 멍치와 압축코일 스프링을 뚜껑 안의 홈에 장착하여 잠금 장치의 걸림 홈에 뚜껑 및 틀의 단턱이 스프링의 힘에 의하여 압착되는 기술이었다. 잠금은 틀에 안착 후 뚜껑을 누르면 잠금 멍치의 경사도에 따라 잠금 멍치가 뒤로 밀려나면서 걸림 홈에 뚜껑 및 틀의 단턱이 홈 사이에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잠금이 이루어지며, 열림은 뚜껑의 계폐 구멍에 지그를 넣어 잠금 멍치를 밀어주면 경사 각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했다.

스프링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스프링을 선정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설치 공간의 특수함과 하중의 정도, 사용 온

도, 부식 방지를 생각하여 복원성이 좋고 진동과 탄성 에너지를 흡수하여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압축 코일 스프링을 선정했다. 스프링 선에 용융 아연 도금처리를 하고 스프링과 잠금 못치를 체결하는 볼트는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에 더욱 강하게 견딜 수 있게 처리를 하였다. 재료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축 코일 스프링의 규격 제품을 사용하였기에 어디서든 쉽게 조립형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맨홀 뚜껑의 재질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다. KS D 6021(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에 명시된 구상흑연주철 재질 450N/mm² 이상을 600N/mm² 이상으로 향상시켰다. 재질이 향상된 만큼 맨홀 뚜껑의 중량을 대폭 줄여서 자원도 절약하고 취급자들이 취급할 때에도 편리하게 하였다. 중량이 줄어들음에 따라 맨홀 뚜껑의 이탈 및 소음 발생의 위험은 앞서 스프링을 이용한 강력한 잠금장치를 설치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제 이거면 됐다고 모든 맨홀 뚜껑이 조용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산 너머 산. 그래도 우리는 넘습니다

맨홀이란 것이 상하수도, 전력공급 및 정보통신 케이블 등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새로 개발한 맨홀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국가 인증이 필요했다.

국가 인증이 없이는 판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직원 20여 명의 연매출 24억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서 국가 인증을 받고 지원금을 받아 시장에 판매할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들여 힘들게 개발한 맨홀을 꼭 인정받아야만 했다.

2007년, 회사가 개발한 기술은 ‘잠금기능이 구비된



맨홀’이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마쳤다. 국가의 인증을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이다. 이어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던 중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추진하고 있는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각 대표와 (주)한국주조의 임직원들은 용기를 얻어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 뚜껑으로 특허기술 평가를 받기로 했다. 2008년 특허기술의 우위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평가비용 2,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특허기술 평가를 적극 활용, 연 매출액은 2007년 24억에서 2008년 41억 3천2백만 원, 2009년 59억 1천3백만 원까지 기존의 매출액에서 2배 이상으로까지 뛰기 시작했다. 특허 출원과 국가 지원사업이 회사의 성장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수들이 그저 단순한 맨홀 뚜껑에 대해 성능 인증을 하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맨홀 뚜껑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이런 인증은 꼭 필요하다는 설득을 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을 거쳐 중소기업청 성능인증과 조달

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잘 견뎠지만 여전히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 맨홀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주로 보수용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아직도 회사는 어렵다.

하지만 회사가 가진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국내 특허 제품으로 기능 및 성능의 향상 그리고 제작공정의 단순화로 향후 10년간은 경쟁 업체 없는 독과점 품목으로 유지되어 안전성, 지속성, 성장성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미국 연방 조달(GSA) 등록으로 수출의 가능성 또한 높다. 가까운 중국의 허술하기만 한 맨홀이나 일본의 비싸고 무거운 맨홀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다.

계속해서 판로 개척을 위해 도전해 갈 것이고, 지금의 상태에서 더 좋은 기능과 성능을 추가해 나갈 것이다.

이렇듯 한국주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편리할 수만 있다면 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슈웅. 슈웅

이제는 차가 지나가도 맨홀 뚜껑은 덜컹덜컹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맨홀 뚜껑은 맨홀 구멍에 입을 물리고 조용히 자

리를 지킨다.

여전히 사람들은 맨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맨홀 뚜껑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저 세상의 많은 소음 중 하나가 조용해진 것뿐이니까. 물론 비가 와서 물이 넘쳐흘러 맨홀 뚜껑이 떠 내려가는 위험이나, 그 빈자리에 생긴 깊은 구멍 따위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아주 희박한 확률의 운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확률일지라도 우리는 조금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맨홀 뚜껑이 차에 닿아 덜컹거리는 소음 하나는 없어져 조금의 조용함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변화 하나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편안해졌다.

2011. 12 |





특허 Q&A

Q. 어떤 새로운 제품을 3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는데, 그 중 1인이 본인 등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인 본인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특허법 제33조 제2항)로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특허법 제44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44조 위반은 특허거절이유(특허법 제62조제1호), 특허이의신청이유(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특허무효이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Q.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에외적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으며,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출원서등 보정을 하여 공지에외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에외적용”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을 해야 하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공지에외적용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서 등 보정으로서 공지에외적용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R e p o r t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고찰 및 사례연구

국가 R&D 특허의 ASEAN 주요국가 지원방안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도출방안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

R e p o r t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해 보자.



임 호 순
특허청 정밀기계심사과장

I. 서론

II. 일본의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및 등록

1. 일본특허청 현황
2. 지재권 출원 및 심사건수
3. 지재권 등록건수

III. 일본의 지식재산권 심판

1. 일본의 특허심판부 현황
2. 지재권 심판청구
3. 지재권 심판처리

IV.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1. 일본의 법원 조직
2.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체계
3. 심결취소소송
4.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5. 특허권 · 실용신안권 민사소송 상세 분석

V. 일본 변리사 등록건수

VI. 결어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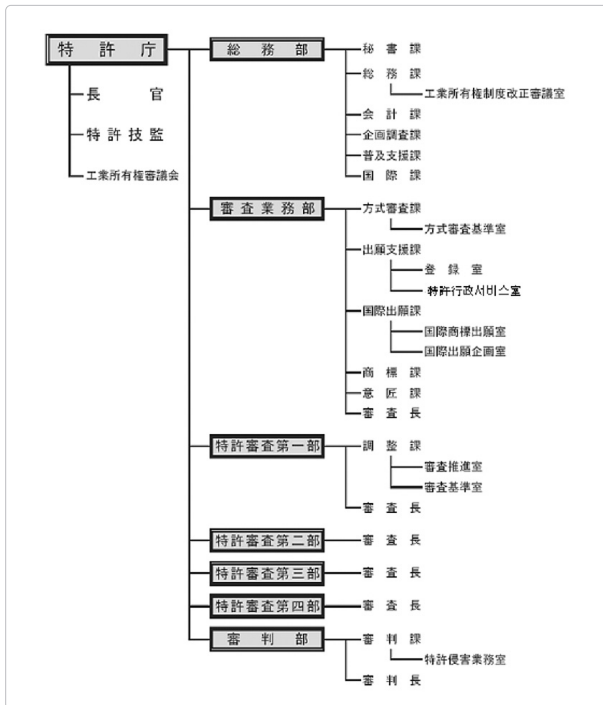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2011. 7.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2002년 총리 주도로 지식재산¹⁾ 전략회의를 창설하였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지식재산고등재판소(특허법원)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올해로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업무를 시작한 지 8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본 원고는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제

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및 등록

일본특허청 현황

일본특허청은 총무부, 심사업무부, 특허심사 제1부~제4부, 심판부를 두고 있다. 심사업무부가 출원 및 등록업무, 상표와 디자인사건의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특허심사 제1부는 농수산업, 광학, 물리 등의 분야에 대한 특허심사, 제2부는 기계분야 특허심사, 제3부는 화학분야 특허심사, 제4부는 전기분야 특허심사를 담당한다. 심판부는 심판사건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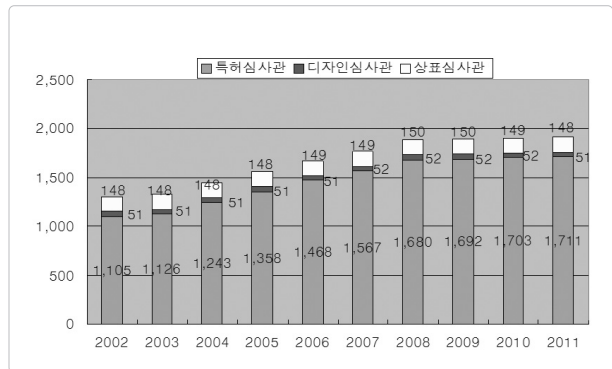
<일본특허청 조직도>

일본특허청의 2011년 총 인력은 2,900명이고, 그 중 심사관은 1,900여 명, 심판관은 387명에 달한다.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정원	2,470	2,479	2,555	2,651	2,716	2,800	2,901	2,904	2,903	2,895
심사관	1,304	1,325	1,442	1,557	1,668	1,768	1,882	1,894	1,904	1,910
심판관	395	396	392	389	386	386	386	387	387	387
일반직원	771	758	721	705	662	646	633	623	612	598

<일본특허청 정원 추이>

2011년 일본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은 51명, 상표심사관은 148명, 특허심사관은 1,711명이다. 최근에는 특허분야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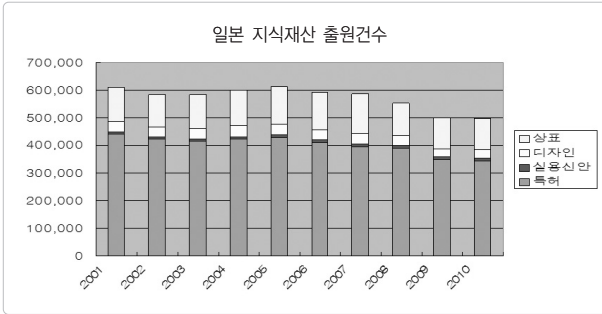
<일본특허청 심사관 정원 추이>

지식재산 출원 및 심사 건수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건수는 2001년 60만건에 달했으나 일본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2010년 50만건까지 감소하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이 35만건, 상표 및 디자인이

1) 일본은 "知的財産"이라고 표기하나,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참고로 우리나라 특허청의 2011년 총 정원은 1,576명이고 그 중 상표디자인심사관은 150여 명, 특허심사관은 710여 명, 심판관은 9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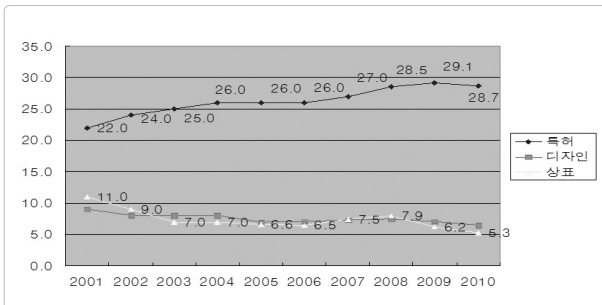
15만 건 정도이다.³⁾



연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합계
	출원	심사청구				
2001	439,175	253,826	8,778	39,423	123,754	611,130
2002	421,044	237,345	8,587	37,230	117,406	584,267
2003	413,092	243,836	8,155	39,267	123,325	583,839
2004	423,081	328,105	7,983	40,756	128,843	600,663
2005	427,078	396,933	11,386	39,254	135,776	613,494
2006	408,674	382,116	10,965	36,724	135,777	592,140
2007	396,291	376,310	10,315	36,544	143,221	586,371
2008	391,002	347,836	9,452	33,569	119,185	553,208
2009	348,596	254,368	9,507	30,875	110,841	499,819
2010	344,598	255,192	8,679	31,756	113,519	498,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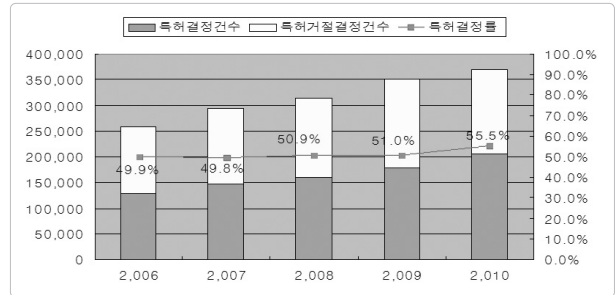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건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심사대기기간은 특허분야가 2001년 22개월에서 2010년 28개월까지 증가한 반면, 상표 및 디자인분야는 2001년 11개월에서 2010년 5개월로 줄었다.⁴⁾



〈일본 심사처리기간 추이〉

특허출원 중 특허를 받는 비율(특허결정률)은 50% 내외인데, 최근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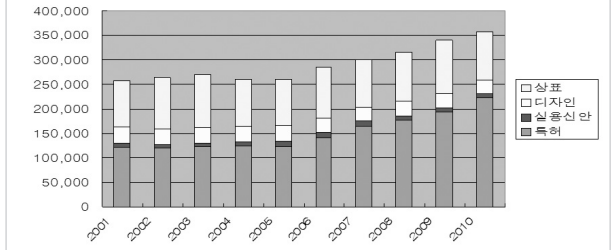
〈특허결정률〉

지식재산 등록건수

일본의 지식재산 등록건수는 2001년 25만 건에서 2010년 35만 건까지 꾸준히 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분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비해, 특허건수는 2001년 12만 건에서 2010년 22만건으로 1.8배 가량 증가하였다⁶⁾.

연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합계
2001	121,742	8,762	32,934	93,548	256,986
2002	120,018	7,651	31,503	105,114	264,286
2003	122,511	7,669	31,342	108,568	270,090
2004	124,192	7,356	32,681	95,866	260,095
2005	122,944	10,569	32,633	94,439	260,585
2006	141,399	10,591	29,689	103,435	285,114
2007	164,954	10,080	28,289	96,531	299,854
2008	176,950	8,917	29,382	100,243	315,492
2009	193,349	9,019	28,812	108,717	339,897
2010	222,693	8,571	27,438	97,780	356,482

지식재산 등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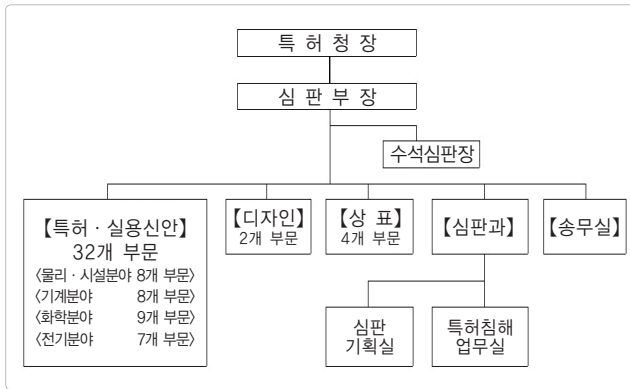


〈일본의 지식재산 등록건수〉

Ⅲ. 일본의 지식재산권 심판

일본특허청의 심판부 현황

일본특허청은 심판부를 두고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특허정정심판, 무효심판, 상표취소심판,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판정⁷⁾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부는 특허·실용신안 32개 부문, 디자인 2개 부문, 상표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심판업무를 지원하는 심판과와 송무실이 있다.



〈일본특허청 심판부 조직도〉

일본 심판부의 심판관은 258명이고 심판장은 129명이다.

구분	일본(2011)			한국(2011)		
	심판장	심판관	합계	심판장	심판관	합계
계	129	258	387	11	88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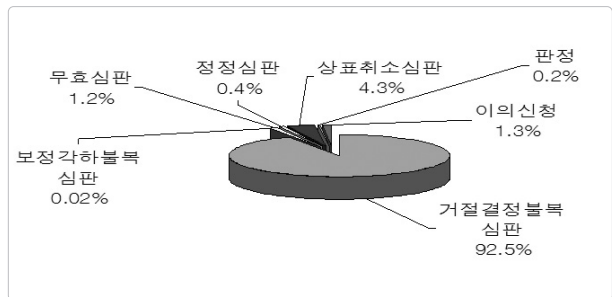
지재권 심판 청구

일본의 지재권 심판청구는 3만 건 내외이다. 심판청구는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에 일부 감소하였다.

연도	거절결정 불복심판	보정각하 불복심판	무효 심판	정정 심판	상표취소 심판	판정	이의 신청	전체 건수
2005	25,440	14	563	230	1,597	88	691	28,623
2006	29,062	27	495	204	1,601	72	700	32,161
2007	35,488	16	515	144	1,757	106	615	38,641
2008	32,981	10	463	139	1,612	47	513	35,765
2009	26,065	17	420	159	1,413	50	480	28,604
2010	29,682	5	373	136	1,380	72	431	32,079

〈일본의 지재권 심판청구 추이〉

심판사건 중 92%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이고, 무효심판은 400건 내외이다.⁸⁾



〈심판종류별 점유율(2010)〉

3) 2010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출원건수는 특허 170,101건, 실용신안 13,361건, 디자인 57,187건, 상표 121,125건이고, 합계는 362,074건이었다(출처: 2010 지식재산통계연보 및 2010년도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발간).

4) 우리나라의 2010년 지재권 심사대기기간은 특허분야 18.5개월, 상표 10.6개월 및 디자인 9.4개월이다.

5) 우리나라의 특허결정률은 2009년에 60.4%, 2010년에 63.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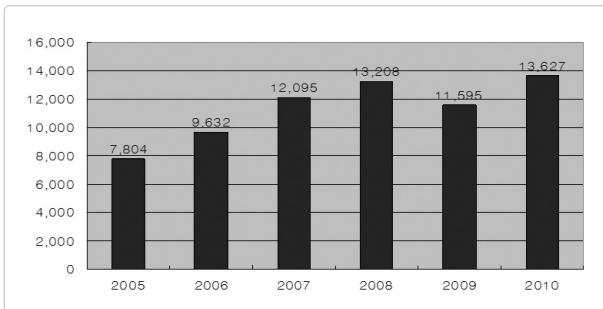
6) 우리나라 2010년 지식재산 등록건수는 특허 68,843건, 실용신안 4,301건, 디자인 33,697건, 상표 53,136건으로 전체 합계는 159,977건이었다.

7) 일본의 판정제도는 1960.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일본도 1960년 이전에는 현행 우리나라의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두고 있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오랜 논의를 거쳐 대안으로 판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판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과 달리, 특허권의 설정에 관여한 행정청이 행하는 일종의 감정이어서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특허법 제71조는 「특허법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는 특허청에 판정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8) 2010년 우리나라 지재권 심판청구는 13,872건이었고, 그 중 거절결정불복심판 10,272건, 보정각하불복심판 2건, 무효심판 1,426건, 정정심판 100건, 상표취소심판 1,182건, 권리범위확인심판 864건, 취소결정불복심판 26건이었다.

지재권 심판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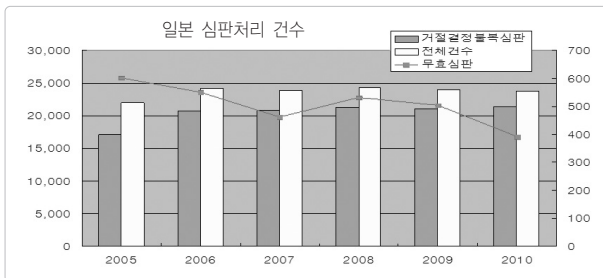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명세서가 보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지정 전에 심사관에게 배당(심사전치) 되어 심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간 1만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며 해당 심판은 소멸된다.⁹⁾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 심사전치 등록건수〉

심사전치 등록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관에게 배정된다. 심판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약 2만 3천건 내외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이 중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소송과 관련이 깊은 무효심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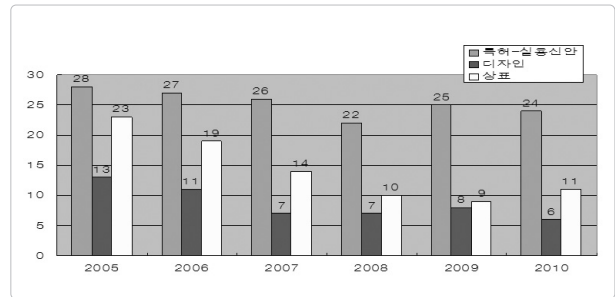
	거절결정 불복심판	보정각하 불복심판	무효 심판	정정 심판	상표취소 심판	판정	이의 신청	합계
2005	17,056	29	601	263	1,538	87	2,407	21,981
2006	20,679	19	551	224	1,590	80	1,012	24,155
2007	20,783	27	462	163	1,650	93	706	23,884
2008	21,298	15	532	135	1,763	85	513	24,341
2009	21,096	14	504	159	1,612	50	564	23,999
2010	21,378	15	392	142	1,387	60	442	23,816



〈일본 특허심판부의 심판처리건수〉

2.0~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⁰⁾

2010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심리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4개월, 디자인의 경우 6개월, 상표의 경우 11개월이다.¹¹⁾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심리기간(개월)〉

심판관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비율(심사결과에 대한 취소환송률)은 전체적으로 45% 내외이다. 다만 분야별로 편차가 커서 특허·실용신안은 40% 내외인데 비해, 상표 및 디자인은 60%에 달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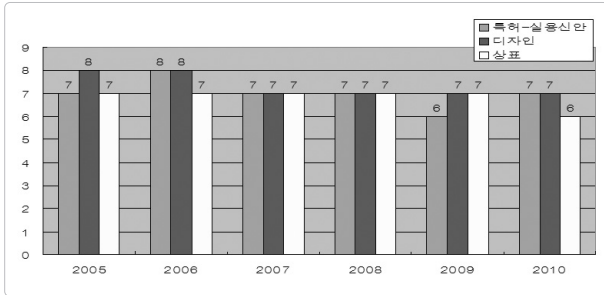
(단위 : %,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허·실용신안	42.5 5,384/12,662	37.7 6,262/16,610	37.6 6,290/16,726	35.8 6,511/18,209	38.5 7,400/19,245	43.5 8,503/19,545
디자인	48.7 579/1,189	52.0 608/1,169	57.7 627/1,086	68.8 688/1,000	66.8 475/711	60.1 309/514
상 표	70.0 2,243/3,205	74.1 2,148/2,900	79.5 2,363/2,971	76.8 1,605/2,089	59.7 681/1,140	60.7 801/1,319
합 계	48.1 8,206/17,056	43.6 9,018/20,679	44.7 9,280/20,783	41.3 8,804/21,298	40.6 8,556/21,036	45.0 9,613/21,378

주) 출처 : 일본 특허청 연보(2010)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환송률〉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판정의 평균심리기간은 6~7개월가량이다.



〈무효심판, 정당심판 및 판정의 평균심리기간(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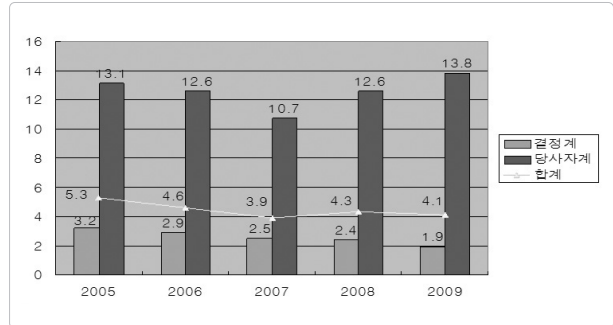
일본 특허심판부가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특허 등을 무효시키는 비율은 2006년 55.0%에서 2010년 38%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¹³⁾

(단위 : %,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 허	55.7 211/379	61.4 194/316	54.8 142/259	58.7 182/310	43.5 123/283	40.2 102/254
실용신안	44.8 13/29	60.9 14/23	58.8 10/17	58.8 10/17	66.7 4/6	50.0 4/8
디자인	44.4 20/45	60.7 17/28	61.9 13/21	36.4 12/33	42.9 6/14	66.7 8/12
상 표	36.5 54/148	42.4 78/184	50.9 84/165	41.3 71/172	41.3 83/201	30.5 36/118
합 계	49.6 298/601	55.0 303/551	53.9 249/462	51.7 275/532	42.9 216/504	38.3 150/392

〈일본 심판부의 무효심판 인용률〉

심판당사자가 특허청 심판부 심결(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4~5%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당심판 등 결정계심판에 대한 제소율은 2~3% 수준으로 매우 낮는데 비해, 무효심판 및 상표취소심판 등 당사자계심판에 대한 제소율은 12~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¹⁴⁾



〈일본심판부 심결에 대한 제소율(%)〉

2011. 12 |

다음호에 계속



9) 2010년 우리나라 심사전치 등록건수는 4,501건이었다.
 10) 우리나라의 2010년 심결건수는 9,274건인데, 그 중 거절결정불복심판 5,808건, 보정각하불복심판 5건, 무효심판 1,427건, 정당심판 93건, 상표취소심판 1,098건, 권리범위확인심판 796건, 취소불복심판 47건이었다.
 11) 우리나라의 2010년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은 10.6개월, 디자인 및 상표는 9.1개월이었다.
 12) 우리나라의 2010년 거절결정취소환송율은 특허실용신안 26.8%, 디자인 37.6%, 상표 62.3%이고 전체적으로는 37.0%이었다.
 13) 2010년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51.9%이었는데, 특허 53.1%, 실용신안 62.5%, 디자인 58.1%, 상표 41.7%이었다.
 14) 우리나라 2010년 심결결과에 대한 불복 제소율은 15.7%이었고, 그 중 결정계심판결과에 대한 불복제소율은 7.3%, 당사자계심판결과에 대한 불복제소율은 26.1%이었다.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고찰 및 사례연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발명으로 볼 수 있고, 수치한정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합금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 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어떻게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과 비교하여 보자.



박 시 영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I. 서론

II.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1.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 가.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
 - 나. 선택발명 및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과 비교
2.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 가.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
 - 나. 선택발명 및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비교

III.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사례

1.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사례
 - 가. 신규성이 부정된 사례
 - 나. 신규성이 인정된 사례
2.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 가.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나.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IV. 결론

I. 서론

합금1)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은 합금 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합금발명은, 합금성분으로서의 원소의 조합은 한정된 원소들로부터의 선택조합에 의하여 얻어지고, 조성범위는 선행 합금발명의 넓은 조성범위로부터 좁은 조성범위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택발명의 일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다. 선택되는 대상이 수

지범위라는 점에서 수치한정발명의 일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합금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어떻게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과 비교하여 상호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및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과 관련된 판례, 심사지침 등을 살펴본 후에,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한 특허법원 등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실무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가.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

합금발명에 있어서의 신규성 판단은 합금을 구성하는 각 조성성분이 동일하고 그 조성범위,

조직상태가 동일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와 성질 및/또는 용도인 유용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²⁾

즉, 다른 합금성분, 다른 조성범위, 다른 조직상태에 따라 다른 유용성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합금성분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첫째, 조성범위 및 조성상태가 동일하고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한 경우, 둘째,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조직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셋째,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한 경우, 넷째,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새로운 성질을 발견하였으나 용도가 동일범주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조성범위 및 조성상태가 동일하고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한 경우³⁾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조성범위 및 조성상태가 동일하면, 작용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인식한 성질이 다르더라도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즉, 선행발명이 출원발명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행발명이 그 용도에 적합한 조성범위와 조직상태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용도한정의 유무에 불과한 것이다.

(2)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조직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⁴⁾

합금의 조직상태는 제조방법에 의존적이어서 합금의 조성범위가 동일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따라 합금의 조직상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경우 동일 조성범위에 동일 제조방법을 적용하면 동일 조직상태가 얻어지므로, 동일 조성범위와 동일 제조방법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합금의 제조방법의 동일성 판단에는 합금의 조성범위의 동일성 판단에 더하여 제조공정의 동일성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⁵⁾

(3)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한 경우⁶⁾

동일 조성범위의 합금이라도, 조직상태가 달라 인식한 성질이 다르고, 그 결과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예로서 동일 조성범위를 가지더라도 출원발명은 피아노선에 적합한 고장력을 부여하기 위한 미세층상조직을 가지는 철합금이고, 선행발명은 미세층상조직을 가지지 않는 톱니바퀴용 철합금인 경우를 들 수 있다.

(4)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새로운 성질을 발견하였으나 용도가 동일범주

1) 합금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금속 성분이 전체로서 균질하게 존재하여 외관적으로는 1개의 물질로서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 합금분야 심사기준(2008. 12), 7면.
2)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16면.
3)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17면.
4)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18면.
5) 특허법원 1998. 12. 17. 선고 98허928 판결.
6)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19면.

인 경우⁷⁾

동일 조성범위의 합금에 대하여 새로운 성질을 인식하여도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용도가 얻어지지 않고, 종래의 용도 적성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때, 즉, 이미 존재하던 용도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는 단순히 그 합금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의 발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내열합금	출원발명: 전기저항재료
Cr : 15 - 35 %	Cr : 15 - 40 %
Al : 5 - 12 %	Al : 6 - 14 %
Fe : 잔부	Fe : 잔부

선행발명은 그 명세서에, 성질로서 고온내산화성, 고전기저항율, 용도로서 저항발열체로 구조체인 것이 기재되어 있고,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에, 성질로서 음의 전기저항 온도계수, 내산화성, 용도로서 전열선, 열응동소자인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원발명은 합금조성, 성질, 용도에 있어서 선행발명과 일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선택발명 및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과 비교

(1)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

선택발명이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이다.⁸⁾

선택발명이 특허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 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행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⁹⁾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첫째 요건은 신규성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 요건은 진보성과 관련된 것이다. 두 가지를 나누어 판단하는 제1설과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은 선택발명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동시에 만족되어지는 것이라는 제2설이 있으나, 대법원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없고, 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제1설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¹⁰⁾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¹⁾

(2)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수치한정발명이란 선행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성질이나 특성을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선행발명에 수치한정의 대상과 수치범위가 개시되어 있고, 출원발명은 개시된 대상의 수치범위를 다르게 한정하는 경우이다.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살펴보면, 첫째,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이어서 곧바로 신규성이 부정되고, 둘째, 선행발명의 수치범위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여서, 곧바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부정되는 경우 등에 신규성이 부정되며, 셋째,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일부 겹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나, 양 발명이 동일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되고, 넷째,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신규성이 인정되며, 다섯째, 출원발명에 선행발명에 없는 새로운 수치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나,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참작할 때 수치한정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선행발명 중에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된다.¹²⁾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둘째의 경우로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고려하고 수치한정에 의해 작용효과가 선행발명과 질적이나 양적으로 다른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실질적으로 진보성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보성이 인정되면 신규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3) 비교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에서 조성성분, 조직상태 등이 동일하고, 조성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적용하면, 선행발명의 수치범위가 합금발명의 수치범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고려하고 수치한정에 의해 작용효과가 선행발명과 질적이나 양적으로 다른 경우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는 실질적으로 진보성 판단을 하는 결과가 되어서 신규성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향상된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에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적용하기보다는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신규성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발명이 특허로 성립되기 위한 첫째 요건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경우로는 선행발명의 실시예를 들 수 있겠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연관되는 유럽 항고심판소의 심결을 살펴본다.

유럽 항고심판소의 경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넓은 수치범위로부터 좁은 하위의 수치범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신규성을 인정하고 있다.¹³⁾

첫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좁을 것, 둘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공지 범위의 선호된 부분(예컨대, 선

행발명에 실시예로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충분히 다를 것, 셋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닐 것, 즉, 선행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발명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합목적적 선택)¹⁴⁾ 따라서, 선행발명에 구체적인 개시가 없는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요건이 충족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셋째 요건은 진보성과 보다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가.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¹⁵⁾

발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합금이 공지의 동일기의 합금과 비교하여 다음 (1), (2), (3) 중의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지의 합금에 비하여 성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고, 따라서 용도의 적성이 증대 또는 확대가 되지 않으면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7)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20면.
 8)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9면.
 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1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1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병합) 판결.
 12)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2011. 1.), 3214.

- (1) 조성범위가 다른 경우
- (2) 별개의 합금 성분이 첨가되었을 경우
- (3) 별개의 합금 성분으로 치환되었을 경우

용도의 적성이 증대 또는 확대 되는 예를 들면, 공지의 전열선 (Fe-Cr-Al 합금)에 0.1-0.3%의 원소y를 첨가한 내열전열합금이 원소y의 첨가에 의해 합금 중 미량의 가스 분출이 제거되어 표면 산화피막이 견고하게 되고, 원소y가 결정입계에 미세하게 분산하여 결정이 조대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종래의 것보다 내열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 선택발명 및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비교

(1)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선택발명이 특허로 성립하기 위한 둘째 요건은 앞서도 살핀바와 같이, 선행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선택발명에 내포되는 개개의 실시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모두 다 특이한 효과를 가져야 하고 둘째, 선택발명의 효과는 엄격하게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¹⁶⁾

따라서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발명자가 인식한 효과에 관한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추후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¹⁷⁾

(2)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살펴보면, 출원발명이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서 선행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발명의 과제가 선행발명과 공통되고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요구되지만, 출원발명의 과제가 선행발명과 상이하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에는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발명의 구성이 동일하여도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요하지 않는다.¹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치한정 사항을 경계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상한치 및 하한치가 임계치라는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실시예 등으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¹⁹⁾

(3) 비교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조성성분 등이 동일하고, 조성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인 질적으로 다른 효과,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

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인 이질적 효과, 임계적 의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별다른 결과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2011. 12 |

13) 손진홍, "유럽특허청 심결의 최근 동향 -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심으로", 외국사법연수논문집(제116집), 378면.

14) T0279/89, 3. 7. 1991.

15)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23면.

16) 특허청, 앞의 심사기준, 10면.

1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병합) 판결

18) 특허청, 앞의 심사지침서, 3312.

19) 특허청, 앞의 심사지침서, 3312.

국가 R&D 특허의 ASEAN 주요국가 지원 방안

특허청 '11년 계획에 ASEAN+3(한·중·일)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체로서 우리나라와 지리적·무역 측면에 있어서 매우 가까우며, 회원국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정부의 의지도 뚜렷한 편이다.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08년 2,086건 등록), 필리핀('08년 838건 등록), 태국('08년 966건 등록)을 선정하였다.



한 유 진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ASEAN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의 10개국을 말하며, 인구 19억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경제발전속도 및 시장의 크기 등으로 인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는 적극적으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2011년 계획에 ASEAN+3(한·중·일)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ASEAN 국가들이 지난 몇십 년에 걸

쳐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장은 대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발명, 혁신,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¹⁾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지난 30년을 통해서 보면, 총요소생산성이 GDP 상승의 1/3에 못 미치는 정도인데, 이는 미국의 약 4/5, 프랑스, 독일, 영국의 2/3 수준과 비교된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부분 실물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똑같은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특허권 점유율에 있어서도 취약점은 그대로 드러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ASEAN 국가들에 부여된 특허권은 5% 미만이었다. 미국특허청 자료를 살펴보아도 1991-2001년에 5% 정도만이 ASEAN 국가들에게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SEAN은 각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개발과 빈곤 감소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4년 『지식재산권 실행계획 2004-2010』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제도 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식재산과 관련한 문제와 영향에 대한 대중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실행 계획은 ASEAN 정부,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ASEAN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동성, 효율성, 유연성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국가 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ASEAN의 학문, 혁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발달을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ASEAN 구성국가의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둘

째 지식재산의 생성, 등록, 상업화, 보호 및 시행에 있어서 국가별 정체성과 개요를 개발한다.

셋

째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의 등록 및 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네트워킹을 독려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창출, 상업화 및 보호를 위한 홍보는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실제 ASEAN 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국가로 변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

째 현재 ASEAN의 과학 기술 기반과 역량이 협소하고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 지역의 국가들이 특허권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지난 1990년대에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0.2% 또는 그 이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수치는 1990년대 이미 3%를 달성한 일본과 한국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실상 싱가포르를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연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위험을 분담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연계와 제휴는 1980년대 초 전자, 생명공학, 자동차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연계와 전략적 제휴의 내실은 상대국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오랜 신뢰와 품질, 전달의 시기적절성에 달려 있다.

둘

째 ASEAN 국가들 사이에서 지식재산 등록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R&D 활동에 대해 자연, 과학 기술 분야 및 방향, 생산성 및 상업적 실행 가능성 부분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정보 부족은 지식 재산 창출 홍보 및 해당 국가에서의 영향 평가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

째 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선형 기술을 포함한 정보 검색은 무료가 아니며,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상업적 데이터 뱅크는 비용이 많이 든다. 만약 번역이나 기타 다른 기술 서비스까지 포함된다면 더욱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과 등록 간의 회전율은 ASEAN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다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특허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기술적 전문 지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ASEAN 국가 내에서 11,000-16,000 달러 범위에 이른다.

넷

째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WTO 가맹국은 대체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모니터링과 시행에 대한 열의가 각기 다양하다. ASEAN 국가에서도 역량 부족, 자원 제약 등 지식재산권법 시행을 위한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

마지막

으로 국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유지 및 보호가 ASEAN국 기업들에게는 복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조화를 위한 오랜 시도가 있어왔으나 국가 간 서로 다른 법, 규정, 절차로 인해 합의점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과 법정 대리 및 해외 기술적 지식에 대한 비용이 상당하여, 종종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실행 계획 2004-2010』는 세 가지 주요

한 요지를 갖는다. 먼저, ASEAN 국가들 안에서 혁신적 경쟁적 부문과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강조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연계 및 연구 개발 네트워크에 대한 홍보가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단위에서 지식재산을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에 포함시키는 것과 IP 자산 평가(및 이를 위한 자립적인 시스템 툴킷 또는 시스템 패키지의 개발), 담보로서 IP 자산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업의 활발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

째 ASEAN 국가의 지식재산 창출에 관한 것이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간소화, 합리화, 비용 절감, 및 IP 체계와 정책 또한 상표 및 디자인 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둘

째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문제와 그 영향 및 다양한 국제 조약 가입 및 준수에 대한 의견과 경험 교환 등이 있어야 한다.

셋

째 지식재산권에 대한 ASEAN

회원국들 간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ASEAN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제외하고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필리핀의 경우, 특허청이 정부부처 또는 대통령비서실 안에서의 독립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도 특허청이 생겼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IP 관련하여 입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 국가들이 교육, 행정, 정부 기관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 결과로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IP 관련 통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는 법률 및 기타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ASEAN 국가들 사이에서의 특허청을 통한 정보 보급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시스템과 기구에 대한 인식과 친밀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광범위한 사업 개발서비스와 회계사, 일반 변호사를

1) 노동 및 자본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제외하고, 기술진보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도를 나타냄.

포함한 지원활동 및 기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제안은 IP 개발, 등록, 관리, 상업화 및 보호에 있어서 너무 일반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유용한 조언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SEAN 각국의 대부분 특허청은 ICT 인프라 및 시설,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 자원의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보급 기술 및 기술 지식 권한을 갖는 이들 특허청은 IP 자산 창출 및 혁신을 위한 공동으로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ASEAN에서의 과학기술적 궤도와 수용능력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사용 기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ASEAN은 충분히 기술 공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무역 측면에 있어서 매우 가까우며, 회원국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

고, 정부의 의지도 뚜렷한 편이다.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어느 정도 지식재산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선정한다. 이 국가들은 특허청을 비롯한 지식재산 관리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는 2,086건, 필리핀에는 838건, 태국에는 966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추후 이들 나라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이후 주변국 7개국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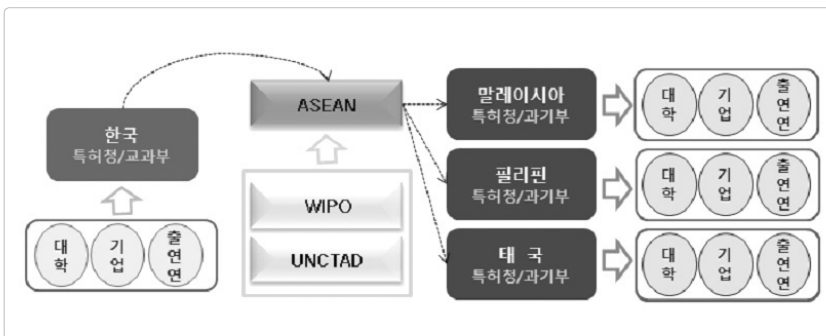


구체적인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대학·기업·출연연으로부터 보유하

고 있는 기술 가운데 매년 무상실시할 특허에 대해 선별을 요청한다. 둘째, 우리나라 정부에서 ASEAN을 통해 3개국 정부로 리스트를 전달한다. 셋째, 각국의 대학·기업·출연연에서 무상실시를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요청 리스트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해당기술에 대해 기관에 무상실시하고, 필요 시 기술개발자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때, 각 국가의 시장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실제 시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대사관 상무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을 하지 못하는 특허를 가장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R&D의 결과물로 매년 5천 건 이상의 특허가 등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은 9.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규모에 비해 빈약한 ODA²⁾ 비중을 높이고, 개도국의 기술 자생력을 확보하는 ODA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12 |



2)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도출방안

정보보호산업은 '사이버상의 정보보호'에서 '개인 및 사회 안전'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 현 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정보보안연구부 부장

세계 IT 보안시장의 흐름이 “사이버상의 정보보호”에서 “개인 및 사회 안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보안 산업의 영역이 단순히 정보보안에서 물리보안 및 융합보안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년에 이런 분야의 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정의하여 산업 육성을 진행하고 있다.

물리보안(Physical Security)이란 시설물 보호, 방범, 방재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CCTV, 건물의 출입 관리 등이 있다.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은 정통적인 정보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정보와 이들 정

보를 유통·보관하는 장비·장치 등의 안전한 운영 및 보호를 하는 것이다. 융합보안 (Convergence Security & Safety)이란 기존 전통산업이 IT와 융합함으로써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정보보안이 필수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각 산업군에서는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정보보안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에 적용한다면, 선박과 외부와의 통신을 통해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 방지,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선박 내에서의 각종 사고 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산업 역시 운전자의 안전 운항 및 자동차 사고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항공에서의 관제 문제 등 IT 융합산업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

정이다.

과거에는 정보보호 및 보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거의 매일 정보보안 사고 뉴스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1년처럼 정보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난 해도 없었지만 우리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심지어 일반 사용자는 무감각해지기까지 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 환경에서 법제도의 정착 및 다양한 정보보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참여가 우리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어 정보보안의 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이한 것은 지식정보보안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민간 산업기술이기에 각종 규제와 법제도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즉, 인프라나 시스템은 일정 수준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역시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고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부기관 및 각종 서비스 운영 기관은 법 조항 및 하위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에 대하여 잠시 소개하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라고 서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OECD의 개인정보보호 8가지 원칙에 따른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제정되어 있다. 그 원칙은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정보 내용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안정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 공개의 원칙(Openness), 개인 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등 8가지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이의 준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안)’을 배포하였다. 여기에는 기업, 개인, 서비스 제공자 등 클라

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주체별로 필요한 보호수칙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이용자 수칙으로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 서비스 계약 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 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기업에서 고려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 이용자 수칙으로는, 개인 이용자가 서비스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가입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처리 방침 및 약관 등을 확인하고, 이용 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공유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하며, 해지 시에는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후 해지할 것을 수칙으로 정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수칙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인 표준으로 활용되는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에 따라, 정보 공개, 안전 확보, 이용 제한,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의 원칙을 준용, 각 원칙별로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포함하였다.

물론 법에는 모든 것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한 침해 사고나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



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왜 이런 규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올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유출되었다. 해당 정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DM 업체에 전달되어, 홍보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겠지만, 사용자 명의 도용 및 사용자 보유 포인트 등의 활용 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공격을 통한 협박, 사례금 청구 등의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청구부 해킹이란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즉, 특정 사이트 공격을 도와줄 해커를 모집하고 사이트 공격 성공 시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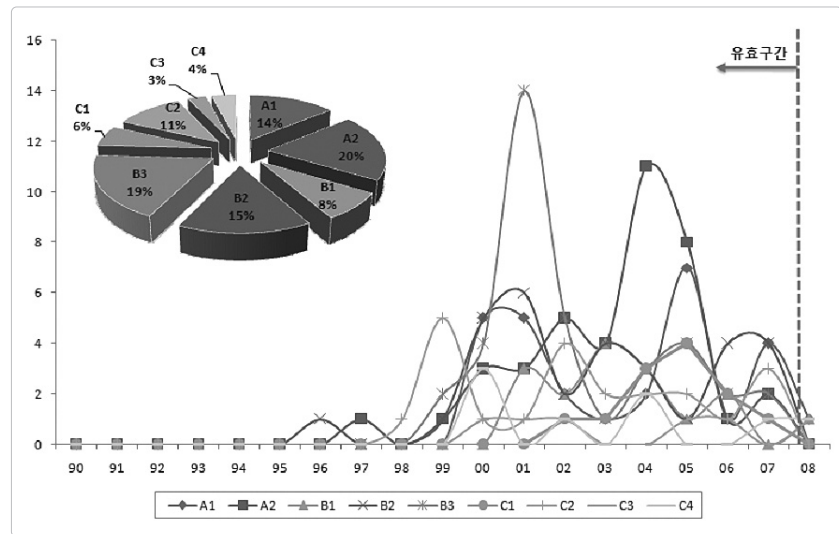
따라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운영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공격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전반 내용과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으나, 지식정보보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씨실과 날실처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법 제도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상정보와, 보유 자산, 은행 계좌, 신용카드, 월/년 소득 등 신용정보, 지문, 홍채, 음성, 얼굴, 정맥 등 바이오 정보, 취미, 기

호, 선호 음식, 활동 영역 등 동태정보 등을 구분하여 각 정보에 대한 접근, 취득, 활용, 보관 등의 기술 및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다의적 언어로 청구항을 구성하여 포괄적 권한 확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개인정보 만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는 산업정보, 기업정보, 시설물 관리, 범죄 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 대처(증거 확보), 재해 탐지 및 예방, 그



기술코드	소분류	기술코드	소분류
A1	모바일 ID 관리기술	A2	모바일 ID 부정사용방지 기술
B1	ID Proofing 기술	B2	심리스 인증 기술
B3	모바일 지불 기술	C1	ID 정보 프로파일링
C2	능동형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C3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정보 검색 기술
C4	ID 기반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 분석구간 : 한국특허 1990~2008년(출원년도)
 ※ 출처 : 특허청, 모바일 ID와 e-ID카드용 보안/프라이버시보호와 고부가서비스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기술분야 특허동향, 2009.10.

〈그림 1〉 우리나라의 모바일 ID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특허 출원 동향

리고 대응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포함된다.

참고로 아래 <그림1>과 <그림2>에서 보듯이, 모바일ID 및 e-ID 관련 특허 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IT 버블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상승 등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우는 점차 증가 추

세에 있는데 이 영향은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의 형태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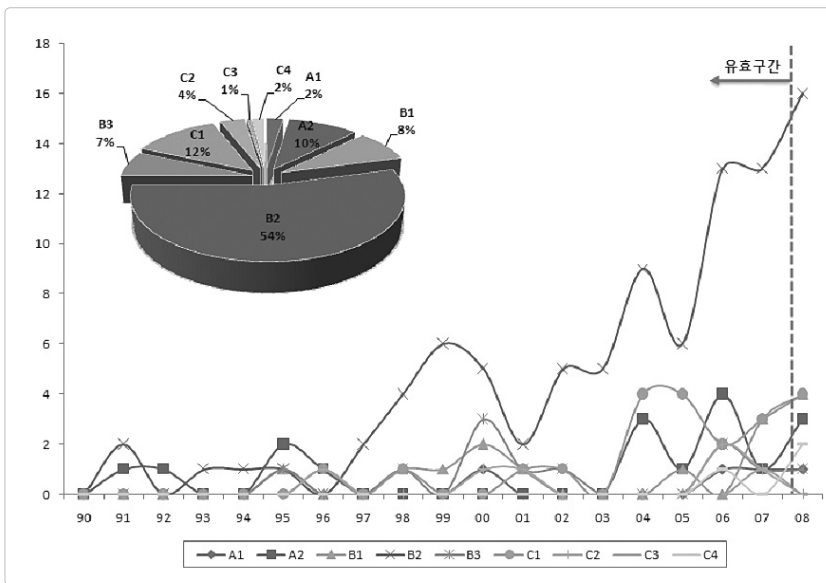
그럼 지식정보보안 분야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많은 정보보안 전문가들도 어느정도 예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에 대

한 지식재산권 못지 않게 정보보안 사업화(Business Model)에 대한 지식재산권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즉 신제품 개발 시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 및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 개발에 앞서 누구나 특허 조사를 먼저 접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설정, 용어 사용에 대한 규격화 미비 등으로 다수의 특허가 검색되나 실제 관련된 특허는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융합보안에서는 기존 산업과 연계성 및 여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 요소로 발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허 발굴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11. 12 |



기술코드	소분류	기술코드	소분류
A1	모바일 ID 관리기술	A2	모바일 ID 부정사용방지 기술
B1	ID Proofing 기술	B2	심리스 인증 기술
B3	모바일 지불 기술	C1	ID 정보 프로파일링
C2	능동형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C3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정보 검색 기술
C4	ID 기반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 분석구간 : 미국특허 1990~2008년(출원년도)
 ※ 출처 : 특허청, 모바일 ID와 e-ID카드용 보안/프라이버시보호와 고부가서비스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기술분야 특허동향, 2009.10.

<그림 2> 미국의 모바일 ID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특허 출원 동향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2650 판결 【상표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ROB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 지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판례의 사실 관계

본 사건의 피고인은 “ROBERTA DI CAMERINO”의 일본 상표권자인 미쓰비시상사로부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액세서리를 직접 공급받아 한국으로 수입판매를 하고 있는 자이다. 해당 “ROBERTA DI CAMERINO”의 상표는 일본에서는 상기 상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상표품이다. 다만, 해당 상표는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국내에서

“ROBERTA”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자로서, 일본의 미쓰비시상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해당 상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란?

진정상품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이라 함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

상품; genuine goods)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에서 정당하게 생산되고 지불된 상품을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시장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을 회색상품(gray market goods)이라고 하는데, 회색상품의 대표적인 경우가 병행수입이며, 위조상품이나 도난상품에 사용하는 흑색상품(black market goods)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최근 세계적인 물적 교류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병행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제품 및 패션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수입국의 상품가격이 타국보다 현저히 높을 때 발생한다.

상표권은 물권적인 독점배타적인 권리이지만 그 대상물을 물리적으로 사실상 지배할 수 없어 모용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침해될 수 있고 한번 훼손된 당해 상표의 신용, 이미지 등 가치는 손쉽게 회복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수입업자의 병행수입행위를 과연 상표권침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¹⁾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1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원칙에 의해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라에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고, 상표권은 서로 독립하여 병존하는 상태에 있다. 이를 1국 1상표의 원칙 및 상표권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은 다른 나라에서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행위만으로는 다른 나라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외국에서 제조한, 국내상표권자의 상품과 동일한 상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상표품이 국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1) 금지론

파리조약 제6조 제3항에 의한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한다. 즉, 상표권은 각국마다 독립적으로 진정상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국의 상표권자 또는 전

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i) 병행수입품의 판매업자는 정당권리자의 광고 및 투자, 대고객 서비스체제에 무임승차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며, ii) 병행수입품은 품질관리가 허술하고 A/S가 미치지 않아 정당권리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고, iii) 금지권이 각국별로 미치지 않는다면 각국별로 등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사용권 제도도 무의미해진다고 한다.

또한 선택적 판매방법론을 그 이론적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 즉 상품공급업자, 특히 고급소비재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제품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상품의 판매는 적어도 최소한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판매자로 한정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적 판매방법은 존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다른 루트를 통하여 동일 제품을 입수한 제3자의 상품배포는 라이선스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정경쟁에 의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택된 판매자를 제외한 제3자의 병행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

(2) 허용론

상표를 일단 적법하게 사용하여 상품을 유통하였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권은 이미 소조된 것이므로 다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거나(국제적 소진이론) 또는 병행수입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해하지 않고 공중에게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상표의 기능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상표기능론) 이러한 태도는 독일 및 일본 법원의 태도이며 상표권의 속지주의가 타당한 범위도 상표보호의 정신에 비추어 상표의 기능에 대한 침해의 유무를 중시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구체적으로 i)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선택권이 있으며, ii) 병행수입을 금지하면 가격차별 및 재판매가격유지를 통해 국제시장을 통제하려는 다국적기업의 독점이윤만을 보장하는 것이 되고, iii)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약화되고 품질보증기능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수요자의 신뢰이익을 해칠 염려가 크지 않다고 한다.



3

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의 유형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1)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품질보증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병행수입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품질, 형태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저명상표를 출처원으로 표시하는 상품으로써의 허용된 범위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병행수입의 유형³⁾

1)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그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사용권자가 외국에서 유통시킨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2)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국내에서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i)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상표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만 하는 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나, ii)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상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라이선스가 경주한 기업노력과 투자의 보호, 상품 품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병행수입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3) 국내의 상표권자가 타인이지만, 이들 간에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i)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총대리점 또는 독점적 판매업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품질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일반수요자는 국내의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지점적인 존재로 인식할 것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ii) 국내외 상표권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169면

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iii)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지만, 자회사 각각이 그 상표에 대한 각국에서의 상표권자이고 시장 공급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내국의 제조자는 외국의 제조자와 끈끈한 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제조자가 상이하여 품질이 상이하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4) 상표가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그 후 1국의 상표권이 양도된 경우와 같이, 당초에는 상표가 동일출처를 표시하는 것이었지만,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현재에는 법률적·경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5) 내외국의 상표권자가 전혀 별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원칙이 적용되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방상표인 경우에 한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문제로 될 뿐이다.
- 6) 국내에 수입되면서 상품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포장 또는 내용물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병행수입품은 A/S나 보증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병행수입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품질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

1 가짜 폴로 사건⁴⁾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국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는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경우,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버버리 사건⁵⁾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장은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우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 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

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스타크래프트 사건⁶⁾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

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수입제품은 이 사건 “STARCRAFT” 상표의 미국 내 상표권자인 블리자드 사(Blizzard Entertainment, Inc.)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소위 진정상품으로서, 미국 상표권자와 국내의 등록상표권자가 위 블리자드사로 동일하고, 이 사건 “STARCRAFT” 상표와 관련하여 그 전용사용권자인 원고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을 쌓아오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국내 등록상표의 출처를 이 사건 상표권자인 블리자드사가 아닌 원고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오락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디(CD)인 이 사건

2) 김원오, 상표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286면
 3) 최성우, 주제별상표법, 469면
 4)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도2191 판결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수입제품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로서 생산자나 판매국에 따라 부수적인 정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주된 내용인 게임의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등록상표품인 원고의 제품과 이 사건 수입제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국내 상표품이 이 사건 수입제품에 비해 시디 키(CD key)의 사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그 부수적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본 판례의 시사점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의 의해서는 명확하게 규율될 수 없어 상표제도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해석에 의해 그 허용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고 상표소유자와 소비자 및 병행수입업자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상표법외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 허용여부에 대해서 상표권의 효력은 각국별로 제한된다는 속지주의 이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하지 않으나 속지주의 이론



을 취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불허하여야 할 논리적인 필연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예는 없다.

다만,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내 상표권자 및 해외에서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한국의 등록상표권자인 고소인과, 일본에서의 상품 공급자인 미쓰비시상사 간에 어떠한 경제적 관계도 없고, 양자의 상품간의 관련성도 없으므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판매한 상품이 국내에서 더욱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

도,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상표권이 존재하는 이상 외국의 유명한 상표품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항이므로 본 판례의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011. 12 |

6)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11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발명역사 속으로 _ 비로 형제 등의 불핀

건강하게 삽시다 _ 숙취 잡는 침차와 마사지로 건강 챙기세요

독자마당 _ QUIZ

책과의 만남 _ 읽기의 힘 듣기의 힘

문화산책 _ 공연 (송년가족뮤지컬 애니), 전시 (2011 서울인형전시회)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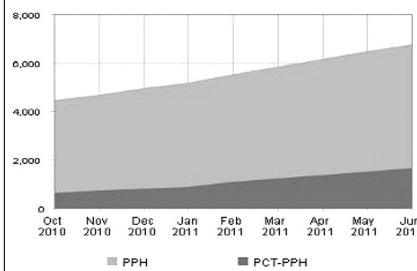
미국 특허상표청, 대외협력 정책부의 2011년 활동 통계 대시보드에 게재

지난 11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1년 대외협력정책부(OPEA) 활동에 대한 통계수치를 대시보드(Dashboard)에 게재하였다.

2011년 OPEA의 활동 목표는 미국 내·외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및 보호, 집행 강화와 미국 발명법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실행이다. 전 세계 여러 특허청과의 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수치도 대시보드에 게재되었다.

OPEA는 대시보드를 통해 USPTO에 신청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건수와 GIPA(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에서 훈련된 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참여국과 같은 중요 매트릭스에 대한 정보를 싣고 있다. 대시보드를 통해 USPTO가 PPH와 특허협력조약(PCT)에 기반한 PPH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PPH 요청건수는 전년대비 67% 이상 증가하였으며 PCT-PPH 요청건수는 약 300% 가량 증가하였다. 2011년 OPEA는 2010년 대비 참여자수가 20% 증가한 5,300명 이상



[2011년 PPH와 PCT-PPH 신청건수]

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49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참여국도 138개국으로 작년에 비해 16개국이 증가하였다.

출처 <http://www.uspto.gov>

미국 특별위원회, 합의 실패로 특허상표청의 수수료 전환제 종료 불발

지난 11월 22일, 미국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 합의가 실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수수료 전환제 종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2011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 제4장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수립된 적자감축합동소위원회(Joint Select Commi

ttee on Deficit Reduction)를 말하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적자를 1조 5천억 달러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BCA는 특별위원회의 최종 상정안이 대다수의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위원회 법안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승인된 특별위원회 법안은 2011년 12월 2일까지 상·하원 모두에게 제출된 후 2011년 12월 23일까지 각 의회에서 표결되어야 한다.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s)와 의원들은 수입창출을 위한 제안서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위원회는 기금 창설을 통해 USPTO에 예산 및 수수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안서를 신중히 살펴 봐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사실상 특별위원회의 합의가 실패하게 되어 이 같은 논의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USPTO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출원인들에게 부과하여 얻은 수입은 재무부에 의해 USPTO 예산계좌로 예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출처 ipwatchdog.com

유럽 특허청, 토마토 특허에 대한 구두 공판 진행

지난 11월 8일, 유럽 특허청(EPO) 기술항소위원회(technical board of appeal) 토마토 특허에 대한 공개 구두 공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토마토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서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현재 토마토 특허는 10개 유럽 국가에서 유효함

출처 <http://www.epo.org>



유럽 상표디자인청, 캐나다 Smart Technologies社의 출원상표인 'BETTER HOMES AND GARDENS' 소송사례 소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10월호

뉴스레터에 캐나다의 Smart Technologies社가 출원한 「BETTER HOMES AND GARDENS」 음성(Verbal)상표 거절사례를 소개하였다.

Smart Technologies社는 경매서비스 등에 「BETTER HOMES AND GARDENS」상표를 출원하였다. OHIM의 심사관은 공동체상표규정(CTMR) 제7(1)(b)조항에 근거하여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하며 거절하였다.

출원인은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항소위원회는 「BETTER HOMES AND GARDENS」 광고 슬로건은 지극히 평범(banal)하고, 찬미적(laudatory)이며 정보적(informative)인 것으로서, 대중이 특별한 심사속고 없이 쉽게 이해하는 문구이며 특정 비즈니스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원인은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하였으나,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식별력은 평균적인 유럽연합(EU) 소비자로서 구성된 대중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EU 소비자란, 첫째, 정보를 잘 인지하고 있고 신중하며, 둘째,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법원은 「BETTER HOMES AND GARDENS」의 표현은 대중에게 당해 서비스의 찬미적 성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대중이 해당 표현을 찬미

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인지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일반법원은 출원신청된 당해 상표는 특별히 독창적이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resonant) 상표가 아니고, 최소한의 해석이나 심사속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CTMR 제 7(1)(b)조항의 식별적 특징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oami.europa.eu

일본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분야에서 BRICs와 협력

지난 11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업제품이나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4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는 2012년 상반기에 인터넷 상에서 모방품을 판매하는 일본어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륜차, 음악 CD,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은 공업제품이나 콘텐츠 등 일본 기업의 모방품 및 해적판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지식재산 관련 부처나 일본 기업의 대처로 업자나 공장을 적발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경제산업성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BRICs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ikkan.co.jp>

일본 외무성, 미국 무역대표부와 모방품 대책 협력에 관한 논의

지난 11월 10일, 일본 외무성 겐바 코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Ronald Ron Kirk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지난 10월 일본, 미국, 한국 등이 서명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의 참가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통한 자유무역권 조성과 지식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 ACTA를 중요시하고 있다.

Kirk 대표는 ACTA의 서명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사의(謝意)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향후 일본과 미국의 협력

을 확인하였다.

출처 <http://www.nikkei.com>

중국 국가지식산업국, 미국 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실시예정

지난 11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국(SI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사업을 2011년 1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의 기간은 1년으로 2012년 11월 30일까지며, 출원자는 SIPO 또는 USPTO에 PPH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USPTO는 SIPO의 심사업무 능력을 파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PPH에 대한 개념을 자국 기업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SIPO는 미국이 중국에 중요한 해외 특허출원 대상국으로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촉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sipo.gov.cn>

중국 관세청, 한국·일본 관세청과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지난 11월 11일, 한·중·일 관세청은 일본 도쿄에서 「제4회 한·중·일 3개국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개국은 2010년 제3회 회의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교환 및 협력하고, 3개국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동행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 제5회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및 업무 교류 협력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3개국 관세청은 향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실무자그룹회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을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으로 채택하였다. 행동계획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하여 조사단속 협력,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AEO)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세관직원 능력 배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있다.

출처 <http://www.sipo.gov.cn>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PO NEWS

아이돌 가수의 명칭, 상표 출원 브랜드화 바람분다!

최근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소녀시대” 등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받으려는 소속사들의 브랜드화 전략으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그룹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등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한류열풍을 선도해 오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 명칭의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4건, 2008년에 17건이었으며, 2009년 138건, 2010년에는 23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 명칭(멤버 포함)의 상표출원 순위를 살펴보면, “소녀시대”가 71건으로 1위를 하였고, “동방신기”가 47건으로 2위이며, 이어서 “에프엑스”, “천상지희”, “보아”, “샤이니”, “트랙스”, “슈퍼주니어”, “나인뮤지스”, “미쓰에이”, “2AM”, “2PM”, “설리”, “원더걸스” 등이 그 뒤를 이어 출원하였다.

또한, 출원관련 지정상품으로는 ‘MP3, 녹음기, 음반, CD플레이어, 음

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테이프 등 음악관련 상품과 향수, 스킨로션, 콜드크림, 미용비누 등 화장관련 상품 그리고 의류, 셔츠, 신발, 모자, 액세서리, 가방, 시계, 벨트와 운동용품’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돌 가수들 명칭의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의 인기에 따른 스타들의 명칭이 강력한 “브랜드파워”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여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명탄 없이도 야간추적 이상무, ‘발광지뢰’ 대상 수상

특허청과 국방부가 공동 개최하는 「2011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대상(국방부장관상)에 지뢰의 파편 대신 발광액을 분사하여 적군을 찾아내는 육군 특전사 이문희 중사의 ‘발광지뢰’가 선정되었다.

동 발명품은 반딧불이의 생물발광에서 착안하여 지뢰에 힘이 가해졌을 때 파편 대신 발광액을 적에게 분사하는 장치로서, 비상상황이며 야간작전 시 조명탄 없이도 적 추적 및 경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금상인 특허청장상(3개)과 육군참모총장상(2개)에는 공군 8전투비행단 안성도 원사의 ‘항공기 연료수분탐지용 전자식 장비’를 비롯하여, 해군 2함대 정종대 군무원, 육군 특전사 정성 상병, 육군 향작사 최동민 중령, 육군 22사단 홍종팔 대위 등의 발명품이 선정되었으며, 이번 대회에서 총 66점의 발명품이 선정되었다.

‘군장병 발명경진대회’는 장병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체험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는 등 21세기형 지식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군 발명경진대회이다.

대상(국방부장관상) 육군 특전사 중사 이문희, 발광지뢰

발명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딧불이의 생물발광에서 착안하여 지뢰 내부에 발광 물질을 넣고 지뢰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에 반응하여 신관폭발/압축가스 분사방식 등을 이용하여 발광액을 적에게 도포하게 하는 장치 · 일반지뢰와 달리 비상상황 지뢰로써 작전의 효과/안전성을 추구 · 일반적인 전술훈련의 교보재로 사용하며, 주·야간에 국지도발 등 적에 대한 추적이나 경계근무, 위병소 근무 시 적에 대한 위협성 경고용으로 활용가능

KIPO NEWS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에 인하대 등 3개 대학

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운영예정인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에 인하대, 전남대, 강원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1월 17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은 창의력과 공학전문지식, 지식재산 역량을 고루 갖춘 지식재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에는 내년부터 대학당 매년 1억 5천만 원을 5년 동안(총 7억 5천만 원 이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12년부터 지식재산 교육 전담교수를 확보하고, 대학과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여 공학과 지식재산 융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전문 지식의 바탕위에 지식재산 중심의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과 사회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특징을 보면 인하대는 운영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강좌 수가 가장 많고 대학발명활동의 실적이 탁월하며, 전남대는 20개의 강좌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교육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강원대는

지식재산 융합 전공과정에 대한 계획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계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짜퉁 전기매트 유통 ‘소비자 생명 위협’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보조난방 제품으로 전기매트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도용한 일명 ‘짜퉁’ 전기매트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1월 2일 국내 유명회사의 전기매트를 모방한 가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시켜 온 조○○(56)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조사결과, 조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 소재 공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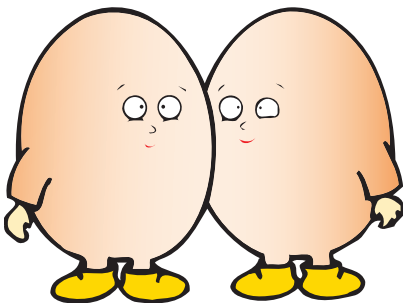
높은 한일, 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 5천만원)을 제조하여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캐릭터 모방 디자인 더 이상 설 곳 없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허청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방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TV 만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캐릭터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여 인형 디자인 등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원래 캐릭터의 특징을 일부 변형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모방 출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유명한 캐릭터를 부정하게 모방하여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를 거절하기로 하였다.



특허청, 미취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업체 취업교육 지원

특허청은 미취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관련 서비스업체로 채용을 유도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교육 수료생의 70%가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서비스는 기업,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특허기술의 평가 및

거래, 특허경영 컨설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취업에 성공한 한 교육생은 “하루 8시간의 합숙 교육이 힘들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졸업 후 불안한 진로 방향의 설정에도 큰 도움을 받았으며, 드디어 취업에도 성공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중 지재권분야 교류·협력 전면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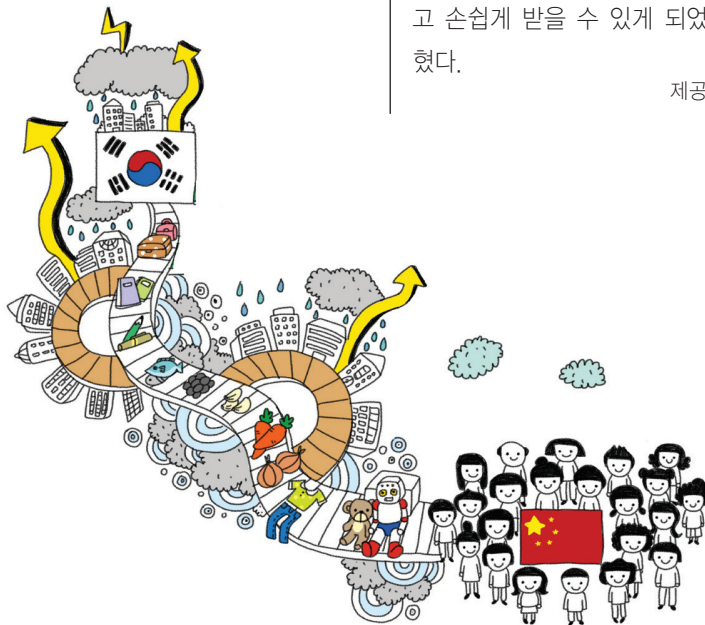
1992년 11월 한국과 중국이 최초로 제1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한

이후 20년을 맞아 지재권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허청은 지난 11월 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중국 국가지식산업권 티엔리푸(TIAN Lipu(田力普)) 중국 특허청장과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중국의 2010년도 특허출원은 약 39만 건으로 일본을(약 34만 건)을 추월하여 특허분야에서 양적으로 G2로 부상한 만큼, 지재권분야에서도 중국시장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PPH를 통해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특허등록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공 특허청



KIPA NEWS



2011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워크숍 개최

회원 상호 간 소통의 장 마련

우리회는 회원사 상호 네트워크 강화 및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한 「2011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워크숍」을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곤지암리조트(경기도 광주)에서 개최하였다.

회원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리회 김광림 회장과 최종협 부회장을 비롯, 대기업·중소기업·특허법률사무소·개인발명가 등 각 기업대표 및 특허전담자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업 대표급(실무자 포함)이 양일 간 회원워크숍을 갖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반적인 우리회 사업설명을 비롯, 명사초청 강연으로 전옥표 워닝경영연구소 대표의 '이기는 습관 이기는 경영' 과 김주섭 LG전자 상무이사 '한국을 둘러싼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신 동향' 의 지적권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저녁 만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며, 지식재산 현안사항에 대해 회원 서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하였다.

우리회는 향후에도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 간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KIPA 사회봉사단, 사랑실천 나누기

무료급식·김장 담그기 등 사랑과 나눔의 현장 몸소 체험



우리회 최종협 KIPA 사회봉사단장 (부회장)은 지난 11월 4일, 대한여성변리사회가 주최한 '제2회 결식아동돕기 자선파티'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전액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10일에는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일환으로 다일복지재단을 방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우리회 사회봉사단 30여 명은 노숙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점심식사를 대접했고, 식사 후에는 식당 환경정리 등 마무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17일에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천사의 집을 방문하여 장애인 및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을 담그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 대한민국 발명교육콘텐츠 공모전 성황리에 폐막

연수중학교 소형석, 주천초등학교 이윤정·길예슬·차승희(팀) 대상 수상

지식재산 e-러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우수 e-러닝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11 대한민국 발명교육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점), 금상(특허청장상 4점), 은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6점),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후원기관장상 16점),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80점) 및 우수지도자에 대한 특별상(특허청장상) 등 총 108점의 수상작, 158명의 수상자(공동수상 포함)에 대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발명교육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I*(Imagination Into Invention)' (4권)는 인천 연수중학교 소형석 학생의 발명관련 동아리, 대회 및 기자단 활동을 깔끔히 정리한 발명 노트이며, 발명문화창작 부문 대상작 '나는야 발명왕'은 누구나 발명왕이 될 수 있다는 노래를 UCC 동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전라북도 진안의 주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윤정·길예슬·차승희 학생의 공동 작품이다.

이날 공모전 수상작들은 지식재산 e-러닝포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의 『대한민국 발명교육콘텐츠 공모전』 코너에 온라인 전시되고 지식재산과 발명교육 홍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특허시장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 개최



U리회는 기술거래 관련 국내·외 최신동향과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 및 보급하여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컨퍼런스룸(317호)에서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에서는 「특허활용전략 국제컨퍼런스」,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종합상담회」 등이 열렸다.

「특허활용전략 국제컨퍼런스」는 미국 특허법 개정,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특허시장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국제세미나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기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비즈니스 동향」 등 총 6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에이엠엔티의 "생체모방 종이 작동기" 사례를 포함하여, 그린파 이오니아의 "파래를 이용한 수질 독성 평가방법", 네오너지의 "일체형 스크롤 팽창기 압축기술" 등 총 7개 기관의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가 발표되어 기술거래 희망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종합상담회」에서는 변리사, 회계사, 기술거래사, 기술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통해 특허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금융과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상담을 지원하였다.

KIPA NEWS



전국 초·중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글짓기 대상에 안선주(경기 설봉초6) 이수민(서울 언북중2)
만화 대상에 이재인(대전 반석초6) 최경호(경기 수일중1) 학생 각각 수상

○ 리회가 주최하고 POSCO가 협찬한 '제35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17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글짓기 대상은 안선주(경기 설봉초6)·이수민(서울 언북중2) 학생이, 만화 대상은 이재인(대전 반석초6)·최경호(경기 수일중1)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글짓기부문은 안선주 학생의 '생각을 모아서 에코글로리'와 이수민 학생의 '발명과 함께하는 에너지제로, 행복 무한대의 미래'가, 만화부문에서는 이재인 학생의 '거북선 축구장'과 최경호 학생의 '식물의 앞차례(도려나기)를 적용한 미래의 건물'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초등부 글짓기 대상을 받은 작품은 벌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친환경적인 건축형태와 함께 나팔꽃 모양의 태양열 저장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글로 표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체상은 수상 및 응모건수가 많았던 서울남사초등학교와 연수중학교가 선정됐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행사는 청소년들이 발명과 관련된 기술적·설득적·창의적 글쓰기 및 그리기 활동을 통해 미래 발명 사회를 꿈꾸고, 그 안에서 미래기술 등을 선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행사이다.

전체 수상자는 글짓기 부문과 만화 부문에서 초·중등부 각각 대상 1명, 금상 5명, 은상 7명, 동상 40명 등 총 212명이 수상하였다.

청소년 아이디어로 40건 특허출원

2011년도 YIP, 최종결과발표회 개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발명가프로그램(YIP)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올해 40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개가를 올렸다.

우리회는 지난 11월 25일, COEX에서 「2011년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Young Inventors Program)의 최종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김영민 특허청 차장 및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박건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육·상담 과정을 통해 최종 개선된 우수 아이디어들의 전시 및 발표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최우수, 우수팀 및 우수지도관찰보고서 제출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그 결과 올해 선발된 최우수 팀은 'Double 1(경기과학교 방준호·박건하·김영우)', 'just대덕(대덕고 서규석·이찬들·이성재)', '아이티아이디어(서울아이티고 박성재·유영석·이창현)' 등 후원기업당 1개 팀씩 총 8개 팀이 그 영광을 차지했으며, 학생들의 최종 아이디어는 후원기관과 변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총 40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됐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청소년들의 특 특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면서 "기업의 교육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YIP를 통해 창의성과 독창성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1 직무발명 국제포럼 개최

한국·일본·대만 직무발명제도 및 기업 운영 우수사례 공유
국내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식도 진행

특허청과 우리회는 지난 11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직무발명 국제포럼과 함께, “2011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주)탑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및 LED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0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내외에 총 1,400여 건의 특허출원과 25% 이상의 매출증가 등의 큰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인스펙션(주)은 PDP 패널 전자검사 장비(AEI) 전문 벤처기업으로서 2006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이직률이 거의 없는 알짜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려상에는 파형강판 전문기업인 평산에스아이(주), 위성방송 수신기 전문업체인 (주)포티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주)테스가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운영 우수기업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특허청 특허기술사업화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가점을 통해 우대하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한편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국내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일본에서는 나라기계社와 대만에서는 킹 디자인社가 각각 자사의 직무발명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주)탑엔지니어링과 삼화콘덴서공업(주)에서 각각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태국 수재민 돕기 성금 전달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지난 12월 1일,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 참석한 태국 공주에게 태국 수재민 돕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태국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사망자 약 500여 명·이재민 12만 명이 발생하고, 약 19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KIPA 사회봉사단장인 최 부회장은 “약소한 성금이지만, 이번 태국 홍수로 큰 피해를 입는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방문한 태국공주는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KIPA 특별상 및 IFA 특별상을 수상하고,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태국의 특허활용 지원정책과 글로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였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Muju 전라북도



무주머루

머루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포도의 순수한 우리말로 청정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깨끗하고 신비로운 과실이라 할 수 있다.



| 상표명 |
무주머루

| 권리자 |
무주머루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40호

| 상품분류 |
제 31류 머루(신선한 것)

연락처
무주머루 영농조합법인
063-323-7788

무주머루와인

무주의 청정고랭지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머루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5℃ 상태로 장기 간동안 발효시켜 머루와인의 맛과 향을 향상시켜 품질이 좋다.



| 상표명 |
무주머루와인

| 권리자 |
사단법인 무주머루와인생산자협회

| 등록번호 |
제 41호

| 상품분류 |
제 33류 머루와인

연락처
사단법인 무주머루와인생산자협회
063-323-7788

1/ 유래

머루와인은 오랫동안 빚어온 전통주인 머루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머루주의 역사는 신라시대부터 빚어온 과실주로 전해 오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지리지 편에 머루의 생산과 머루주 관련 기록이 있다.

2/ 특성

머루는 포도과에 속하며 일명 산포도라 부르는 냉쿨성 목본식물로 해발 100~1,300m 지역의 산기슭에서 10m 안팎까지 자라고 머루는 포도보다 칼슘, 인, 철분, 화분 및 각종 무기질 등이 2~10배 이상 높고 특히 항산화작용을 하며 폴리페놀성분과 안토시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무주지역은 고랭지 지역으로 평균해발고도가 900m로 당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교차가 큰 기후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색이 선명하고 비타민 함량과 당도가 높으며 맛과 향이 뛰어나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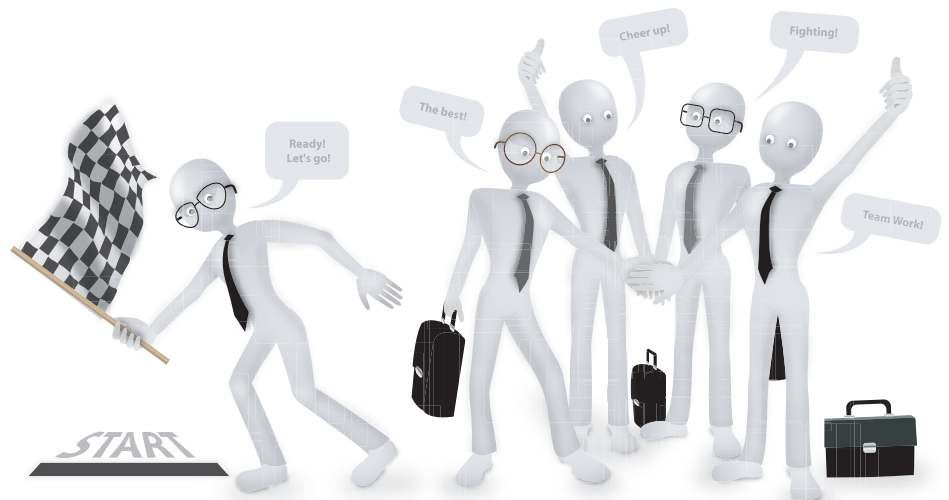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11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 대표자: 문환구 · 박원미
- 업태/종목: 서비스업, 변리사
-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722호
- 전화번호: 02)587-9395
- 홈페이지주소: <http://duriam.com>



비로 형제 등의 볼펜

더 편리하게 글을 쓸 수는 없을까?

발명역사 속으로

직 장인들에게 사무용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기구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볼펜'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볼펜이 오늘날 이처럼 사랑받게 된 데는 좀 더 실용적인 제품을 열망하는 여러 발명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다.

만년필 시대를 지나 볼펜의 첫 역사를 연 인물은 바로 헝가리의 라디슬라스 비로(Ladislav Biro, 1899~1985)와 게오르그(Georg) 형제다.

형인 비로는 조각가이자 화가였으며, 또한 언론인이기도 했다. 그는 매일 많은 양의 글을 써야만 했는데, 만년필로 그 일을 하기에는 간단하지가 않았다. 취재나 교정 도중 만년필의 잉크가 말라 버려서 잉크를 보충해야만 했고, 날카로운 펜촉으로 종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을 위한 원고의 교정을 보던 비로는 '잉크를 보충해 주지 않아도 되고, 종이도 찢어지지 않는 필기구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곧바로 화학자이던 동생 게오르그에게 끈적거리는 잉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날부터 둘은 새로운 필기구 발명에 몰두했다. 1938년 그들은 몇 번의 실패 끝에 볼베어링을 통해 특수 잉크가 나오도록 하는 현대식 볼펜을 발명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하지만 헝가리에서 특허를 받았으나 잉크를 녹이는 기름을 찾지 못해 생산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영국인 헨리 마틴의 후원으로 1943년에 특허를 획득하고 'Biro'이라는 브랜드로 볼펜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후 그들



라디슬라스 비로

은 잉크가 새는 피스톤식의 볼펜을 튜브식으로 바꾸는 등 품질을 개선하였다. 볼펜은 영국 공군에 처음 지급되었는데, 고도에서도 잉크가 새지 않아 큰 호응을 얻었다.

비로의 볼펜은 출시되자마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미국에는 밀턴 레이놀즈에 의해 알려졌는데, 그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하던 중 비로의 볼펜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잉크를 내보내는 시스템을 개량한 볼펜을 만들었으며, 미국 정부는 레이놀즈의 볼펜 10만 개를 구입해 군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인 화학자 프란츠 제이크는 찰기가 있는 잉크 개발에 성공해 '물속에서도 쓸 수 있는 펜'이라는 광고로 히트했다.

비로에 앞서 미국인 존 로우드가 1888년에 볼펜을 발명하여 특허를 취득했었지만, 만년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필기구 시장에 일대 혁명을 몰고 온 볼펜은 여러 사람들의 연구가 보태져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볼펜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들어온 미군에 의해서였다. 이후 1963년 들어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고, 60년대 말부터 대중 필기구로 정착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비로의 생일인 9월 29일을 발명가의 날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숙취 잡는 칩차와 마사지로 건강 챙기세요

연말이 되면서 각종 모임이 잦아져 술 마시는 자리가 늘고 있다. 적당히 마시면 분위기도 좋고 묵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조금만 과해도 피곤한 몸과 마음을 남기는 게 숙취다. 연말마다 피해갈 수 없는 숙취와 피로, 과연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아 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있는 사람, 화장실에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사람, 속이 쓰려 괴로워하는 사람, 얼굴은 별경게 달아오르고 세수도 안 한 듯 푸석푸석해 보이는 사람... 연말이 되면 어느 사무실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적정량을 넘어 몸이 이기지 못할 만큼 술을 많이 마셨거나, 쉬지 않고 매일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알코올 분해과정에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 때문에 간이 손상되면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토하기도 하고, 속이 메스껍고 설사를 동반한 복통 등이 일어나면서 피로가 쌓이게 된다. 체질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취하게 되는데, 과음 시에는 간에 큰 무리가 가면서 심한 숙취로 고생할 수 있다.

김소형
한의학 박사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작용으로 소변이나 땀, 기타 분비 물을 통해 많은 수분이 소실되는데, 이처럼 수분이 배출되면서 미네랄과 같은 여러 가지 전해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뭉뚱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저혈당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

숙취로 고생하는 몸 속 다스리기

한의학에서 술은 물과 불의 극단적인 성질이 합쳐진 것으로 보는데, 술이 지나치면 수승화강(水昇火降), 즉 불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물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무리가 온다. 음주 후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붉어지는 것은 불의 기운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먼저 땀을 내어주고 그 후 소변을 통해 숙취를 배출하라고 했는데,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땀을 내는 반신욕 또는 샤워는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숙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먼저 음주 전에는 반드시 음식을 섭취하여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위 속에 지방이나 단백질 함유 음식이 있으면 알코올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음주 전 우유 한잔은 위를 보호하고 숙취를 예방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아야 하고,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3~4일의 휴식기간을 갖는 것이 좋으므로 매일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술과 함께 탄산음료

를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따뜻한 물에 꿀이나 차를 타서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고, 탈수현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숙취로 인한 갈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침이다. 한방에서 갈근이라고 불리는 침은 <동의보감>에 숙취에 가장 좋다고 나와 있는데, 경련을 진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설사를 낫게 하고 갈증을 완화시킨다. 특히 지나치게 과음을 해서 급성중독이 되면 얼굴이 파래지고 혼수상태나 인사불성이 되는데, 이때 침뿌리를 짓찧어서 나온 즙을 입에 부어 넣으면 점차 술이 깨어 낫는다고 했다. 침을 차나 탕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은데, 음주 후 갈증이나 구토, 설사 등에 도움이 되며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도 그만이다. 만약 해독이 어느 정도 된 뒤에도 머리가 상쾌하지 못하면 서너 번 정도 마시면 좋다. 숙취에는 마도 좋다. 마는 숙취를 없애고 피로한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식욕을 북돋워주는 효과가 있다.

술 마신 다음날에는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있다. 바로 지친 속을 달래주는 해장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큰한 해장국을 많이 찾는데, 술을 마신 후에는 위가 헐어 있



는 상태이므로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보다는 담백한 해장국이 도움이 된다. 해장에 좋은 식품으로는 콩나물이 있는데, 콩나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생성을 돕는다. 특히 꼬리 부분에 많아 숙취 해소가 목적이 될 때는 꼬리를 떼어내지 않고 요리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북어는 간을 보호하는 아미노산이 많아 좋고, 재첩국에 함유된 단백질은 간해독에 효과가 있다. 또 겨울에 제철을 맞은 해산물도 좋은 해장음식이다. 꼬막에 함

유되어 있는 베타인은 과음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로 인한 간 속의 지방축적을 막아주고 혈관 속의 노폐물이나 독성을 배출·해독하는 역할을 해준다. 또 홍합에 물을 넣고 끓이면 홍합에서 우려나온 베타인, 핵산, 호박산 등의 성분으로 인해 특유의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간의 독소를 풀어주는 타우린 성분으로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장국으로도 속이 달래지지 않는다면, 숙취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해보자. 술을 마신 뒤 속이 좋지 않은 것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위통이 있을 때는 합곡과 족삼리를 지압해주면 도움이 된다. 합곡은 손등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펼쳤을 때 엄지와 검지의 뿌리 뼈가 겹치는 부분 중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말한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자극해주면 위통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 족삼리는 위를 다스리는 경락의 기운이 모두 모이는 곳이다. 그만큼 위장에 관련된 질환에 작용하는 기운이 강한 혈자리인데, 족삼리는 무릎 뼈에서 네 손가락 폭만큼 내려간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위치한다.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용, 즉 하기 작용이 있어 족삼리를 자극해주는 것은 술을 마신 후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상열감이 심한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음주 후에도 탱탱한 피부 유지하기

알코올이 몸 안에 흡수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흐트러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피부다. 그래서 과음을 하게 되면 트러블이 발생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칙칙해지고, 울긋불긋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음주 후에도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안주는 혈행을 좋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간과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더디게 하며, 짠 음식은 체내 수분

대사를 흐트러 다음날 얼굴을 붓고 푸석푸석하게 만든다.

간혹, 술에 취해서 세안을 하지 않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피부에는 치명적이다. 술을 마신 뒤 돌아와서는 딥 클리닝으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말끔하게 씻어낸다. 이 때 녹두를 활용하면 좋은데, 녹두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묵은 때를 제거해주고 열기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를 효과적으로 없애주고,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곱고 하얀 피부를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다. 하여 세안제와 녹두 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사람은 수분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출근했다가 얼굴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난치해질 수 있다. 더욱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잔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촉진되므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2011. 12 |

독자마당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QUIZ

1. 최소 인원과 장비로 최단 시간에 정상을 등정하는 산악 방법은?
2. 태양 핵에서 거품처럼 솟아오른 후 수십만 km 높이의 태양 대기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가라앉는 태양표면 폭발을 의미하는 말은?
3. 1963년 11월 30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조선일보가 마련한 명실상부한 한국영화의 그랑프리로 불리우는 상은?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책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

- ▶ 임경희 독자 _ 아이들이 집에 배달된 잡지를 우연히 봤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만화나 숨은그림찾기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김용희 독자 _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애플 분쟁, 표준특허 등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명의 탄생배경을 기록한 발명역사 속으로, 생활 속의 건강관련 칼럼도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 ▶ 이지영 독자 _ 지식재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발명특허' 책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재권 책자와는 구별된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책자에 발명만화도 함께 수록되면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호 퀴즈 정답

1. 항거불능 조항
2. 트란스트리메르
3. 밈(meme)

퀴즈 정답자

임경희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김용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이지영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책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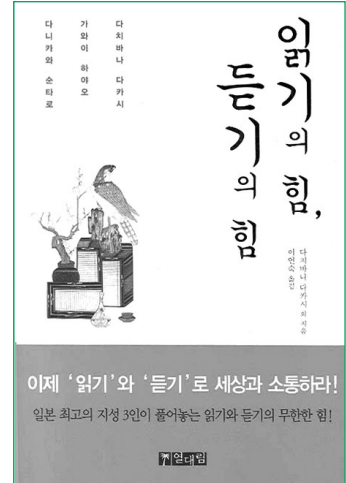
읽기의 힘 듣기의 힘

일본 최고의 지성 3인이 말하는 '읽기'와 '듣기' 힘

〈읽기의 힘, 듣기의 힘〉은 '읽기'와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언어를 최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석학 세 사람,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다치바나 다카시와 일본을 대표하는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 일본 현대시의 개척자 다니카와 순타로가 '읽기'와 '듣기'를 주제로 나눈 강연 및 심포지엄을 엮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언어를 '읽기'와 '듣기'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저자들은 경험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 '읽기'와 '듣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왜 '읽기'와 '듣기'가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각자의 사유를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읽기'와 '듣기'에는 책을 읽거나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단순한 정보 습득의 기능을 넘어 우리 삶에 풍요와 깊이를 선사한다고 강조한다.

강연 부분에서는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읽기'와 '듣기'의 필요성과 개념, 우리의 삶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리학과 과학, 문학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있다. 심포지엄 부분에서는 '읽기'와 '듣기'를 시작한 시점부터 과학의 발전이 '읽기'와 '듣기'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공간에서의 '읽기'와 '듣기', 인류 시원부터 있었던 '읽기'와 '듣기' 등의 주제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저자_다치바나 다카시
출판사_열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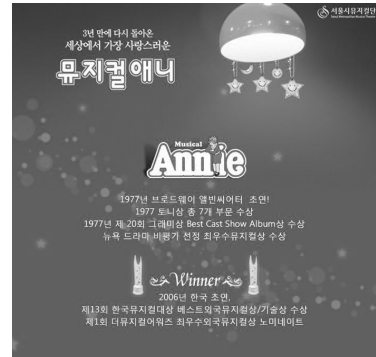
송년가족뮤지컬 애니

2011. 12. 15 ~ 2011. 12. 29

“뮤지컬<애니>개막 전부터 줄줄이 매진”- 조선일보
 “토니상 7개 부문 수상이 말해주듯 연말 가족공연으로 나무랄 데 없다.” - 문화일보
 “뮤지컬 전쟁 속 ‘애니는 웃었다!’ 경제난에 의기소침한 관객들은 이 작품을 보며 위안을 얻고 기분 좋게 극장을 나설 것이다.”- 국민일보
 “〈호두까기인형〉을 밀어내고 입성한 <애니>는 가족뮤지컬에 대한 우리의 낮은 기대치가 전복되는 쾌감을 선사했다.” - 세계일보
 “어려운 현실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애니’ 지켜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애니’는 그런 ‘마법의 뮤지컬’이다.” - 파이낸셜뉴스

뉴욕의 한 고아원에는 11년 전 떠나면서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남긴 부모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는 애니가 살고 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찾으러 오실 테니 자기는 고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애니, 부모님이 자신을 못하는 다면 자기라도 나가서 부모님을 찾겠다며 특하면 고아원을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한편 고아원의 원장 해니건은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아이들 괴롭히는게 취미인 고약한 노처녀, 몇번이나 고아원을 빠져나가 자기를 해고당할 위기에 몰아넣는 애니를 가장 싫어한다.

어느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이 고아원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세계적인 갑부 올리버웁스 씨의 개인 비서 그레이스가 올리버 씨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고아를 고르러 온 것. 마침 해니건의 사무실에서 별을 받고 있던 애니가 그레이스의 눈에 들고, 해니건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니는 올리버 씨의 집에 크리스마스 손님으로 초대 받는데...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기간 : 2011. 12. 15 ~ 2011. 12. 29
 관람시간 : 130분
 기획사 :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2011 서울인형전시회(The 4th Seoul Doll Fair 2011)

2011. 12. 23 ~ 2012. 1. 2

국내 최대 연례 인형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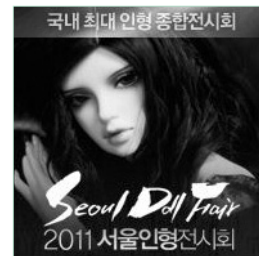
세계적으로도 개최 사례가 없는 인형 종합 전시회로서 작품작 수량과 전시장 면적 등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매회 대규모 집객과 높은 화제성을 자랑하는 연례 인형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인형 1만여 점을 한 자리에 소개하며 매년 같은 작품을 반복해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작품을 엄선해 전시하였다.

수공예 작품 중심의 고품격 전시 콘텐츠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유일무이한 수공예 작품을 중심으로 재료와 제작방법을 달리하는 각양각색의 인형 1만여 점 전시, 장인정신이 담긴 수공예 인형, 희귀인형, 인형만의 미적 영역과 특징을 강조한 실험적인 작품, 추상작품 등 제작수준과 조형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 대거 전시된다.

주요 전시공간은 인형이 각종 소품, 세트와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테마관 형태로 구성된다.



공연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Hall A(구 태평양홀)
 공연기간 : 2011. 12. 23(금) ~ 2012. 1. 2(월)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오후 6시 입장마감)
 주최 : 서울인형전시회 시행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테디베어협회, 한국비스크돌협회, 한국돌하우스협회, 한국형질인형협회, 한국창작구체관절인형협회, Pandora Box, E-do, 내가만든나라, 불룸돌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확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용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아이디어가 선풍타격이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국가녹색기술대상, LS산전 우리나라가 한 눈에 반한 녹색기술이래요

많고 많은 녹색기술 중에
우리나라가 훌쩍 반해버린 녹색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LS산전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신 성장동력 기술의 맨 앞에 선
사람과 환경을 위한 첨단 녹색기술
LS산전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S산전,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탄소배출량, 시간대별 요금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효율적인 전력 에너지 사용은 발전소 건설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켜 친환경 녹색사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500만 톤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무 9억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국내 최고의 녹색기술입니다**

국가녹색기술대상이란? 2년 내 상용화된 기술 중에 최고의 녹색기술을 선정하는 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업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하여 시상